

이어 진행된 변호인 반대신문은 강기훈 동지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정도로 간단히 하겠다고 하여 약 20분에 걸쳐 간단히 진행되었다.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강기훈 동지는 “공소장에는 내가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김기설동지에게 유서를 대신 써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기간에 김기설 동지를 만난 것은 5월 4일 밤 10시께 김기설 동지가 전민련 사무실에 들렸을 때 잠깐 봤던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변호인 반대신문을 끝마치고 계속된 강기훈 동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인 혁노맹 관련 신문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안인 유서대필 부분에서 80여항을 신문한 반면, 혁노맹 사건 관련 부분에서는 100여 문항을 신문했다.

검찰은 혁노맹 관련부분을 신문하면서 처음에는 혁노맹의 이념과 노선, 그리고 가입여부를 묻다가 결론에 해당하는 뒷부분 20여 문항은 주로 ‘이같은 혁노맹의 변혁이론, 정세관, 전술론에 입각해 유서대필을 해 준 것이 아니냐’며 강기훈 동지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한 것이 반체제 운동세력의 ‘공산주의자’적 행동이라고 몰아붙여 방청객 들을 어리둥절 하게 했다. 또한 검찰은 ‘공산주의자 10대 신조를 아느냐’고 묻고 “혁명을 위해서는 자신의 아버지도 죽일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자”라며 강기훈 동지가 동료의 죽음을 혁명을 위해 이용했다는 후안무치한 논리를 폈다.

한편 이날 첫 공판을 앞두고 전민련과 강기훈 후원사업회는 「이번 사건 재판부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정당한 변호권을 인정하며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온 국민과 함께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 볼 것이며, 현 정권의 비열한 조작음모와 부당한 탄압에 맞서 오로지 진실을 무기로 양심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KNCC)도 「재판부가 정의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이끌어 강기훈 동지의 무죄를 입증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 하였다.

*** 김창국 변호사의 모두진술 ***

피고인 모두 진술에 앞서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공소사실 중 자살 방조부분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상 일시, 장소를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해야만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소장에 나타난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용이케 할 목적으로 4월27일 부터 5월 8일 사이 서울이하 불상지에서 유서를 대필해 주었다.’라는 부분은 검찰의 의도성이 보여지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으로는 김기설씨가 분신계획을 주위에 알린 것은 분신자살 2일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4월 27일 이후부터 5월 8일사이 서울이하 불상지라 한것은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형사소송법 상의 기본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이 사건 공소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강기훈 동지의 모두진술 ***

지난 8월 초 부터 20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추가조사를 받았습니다.

재판에 임하며 본인은 제 개인의 누명을 벗는 것 뿐만아니라 온 국민적 의혹을 벗겨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유서대필 용의자로 몰린 지난 3개월 동안 본인에게 있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백주대낮에 누명을 뒤집어 썼다는 것 뿐만아니라 그 동안 민주를 위해 싸워온 민주세력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초래 하게 했다는 점이 더욱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번 유서대필 사건은 본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 정권의 비열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본인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 강경대 열사의 두번째 장례식 도중 본인이 유서대필자로 지목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내용에 관계없이 본인은 사건

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날 부터 명동성당 농성에 합류하였습니다.

당시 나는 법치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써 검찰소환에 대한 출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검찰 수사가 언론공세, 정치공세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나는 명동성당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검찰 수사과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시 이를씩 계속 잠을 안재우고 모욕적인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검사외에 건장한 체격의 수사관이 빙 둘러싼 상태에서 조사를 받음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으며 이러한 고도의 수법에 의해 반노이로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시작 만 하루만에 불가항력의 항거불능 상태에서 자진 출두 전에 밝혔던 묵비권 행사를 포기하고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홍성은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은 본인과 홍성은씨가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홍성은씨를 차버리기 위해 기설이 한테 소개시켜 준 것이 아니냐 는 등 본인에게 참을 수 없는 인간적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검찰조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았습니다.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5사람의 필적을 같은 사람의 필적으로 감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일지는 나중에 3인의 사회국 부장들이 함께 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단 조사 이를 후, 담당검사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혁노맹의사록 중 일부의 글씨와 유서의 글씨가 같다고 하며 본인이 혁노맹 회의에 참가해서 발언하고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작의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조사시 유서 또는 메모지 등등 유서필적과 같은 내용을 같은 필기구로 똑같이 작성하라는 것을 반노이로제 상태에서 거부했으나 검사가 자신과 같이 써보라고 강요하여 나중에는 결국 쓰게 되었습니다. 검사와 같이 유서의 내용을 써서 유서와 대조를 해보았으나 오히려 검사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과 흡사해서 감짝 놀라기도 했다.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본인이 엄청난 피해의식과 옳지 못한 것 속에서 유

성명서

강기훈씨 1차 공판에 즈음하여

기독인의 신앙양심에 따라 김기설씨 유서대필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해 온 본회는 유서대필혐의로 기소된 강기훈씨 1차 공판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본회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의 자체조사를 통하여 김기설씨의 유서는 자필임이 확실함으로 검찰이 강기훈씨를 유서대필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국가 공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임을 우려하여 강기훈씨의 기소철회를 간곡히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강기훈씨를 자살방조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본회는 지난 7월 18일 일본 최고의 감정가 오니시 요시오씨의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김기설씨와 강기훈씨의 필적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발표는 우리국민 뿐만아니라 아시아기독교협의회, 일본교회협의회 등 세계 기독인들이 진리와 양심을 수호하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유서대필공방의 진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 8월 21일 강기훈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함으로 또 한번의 잘못을 저질렀다. 이미 오래전에 조작사건으로 드러난 혁노맹 사건으로 검찰이 강기훈씨를 추가기소한 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강기훈씨를 비롯한 재야단체의 도덕성을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인 것이다. 본회는 검찰의 추가기소는 어떻게든 강기훈씨를 유죄판결받게 함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밝혀둔다.

본회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강기훈씨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아울러 본회는 재판부가 정의와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그의 무죄를 입증할 것을 기대한다.

1991. 8. 28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박 광 재

강기훈씨 첫공판 이모저모

“법정서 던질 가능성” 이유

○...강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 28일 서울형사지법 417호 법정 주변에는 법정 입구는 물론 법정으로 통하는 계단 등 곳곳에 사복경찰과 검색원들이 늘어서 근래에 보기 드물게 삼엄한 경비를 펼쳐 이 재판의 비중을 실감하게 했다.

이날 경비상황은 ‘반국가단체의 수괴’ 혐의로 재판중인 박노해씨의 재판 때보다도 더 삼엄한 모습을 보였으며 한 여자방청객의 경우 손가방 속에 넣어둔 사탕까지 “법정에서 던지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색원에 의해 압수당하기도 했다.

이런 검문검색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방청을 제한하기 위한 방청권을 발부하지는 않았으며 방청객은 2백명을 넘지 않아 예상보다 적었다.

“정치적 음모로 구속” 모두진술

경비삼엄 손가방속 사탕까지 압수

“재야 민중세력 탄압” 주장

○...강씨는 20여분에 걸친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이 자신을 유서대필자로 지목해 구속한 것은 당시 높아진 민주화 열망을 누그러뜨리고 정권의 부도덕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은 정치적 음모라고 말했다.

또 강씨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누명이 아니라 그간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재야 민중세력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엄청난 피해의식 속에서 유서와 글씨체가 비슷한 동료를 거명해 그 동료에게 큰 피해를 준 사실을 가슴아파한다”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해 죽은 김기설씨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씨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웃음을 띤 채 법정에 들어왔으며 검사의 신문이 계속되자 다소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백65개 문항 4시간 신문

○...검찰쪽에서는 강씨의 유서대필 혐의를 수사했던 당시 서울지검 강력부 소속 신상규·송명석·임철 검사와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수사한 공안2부 안종택 검사 등 4명이 나와 자살방조 부분 75문항,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90문항 등 모두 1백65개 문항을 4시간여 동안에 걸쳐 신문했다.

검찰은 분신 뒤의 강씨 행적, 김씨 여자친구 홍이무개씨의 진술 부분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부적으로 질문을 했으나 정작 ‘유서대필’ 경위에 대해서는 “김씨가 분신하려 한다는 사실을 미

검찰-변호인 잦은 마찰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재판진행 절차, 신문내용 등과 관련해 잦은 마찰을 빚어 ‘검찰과 재야간의 도덕성 싸움’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건의 비중을 실감하게 했다.

특히 검찰 직접신문 도중 이석태 변호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일시 이후의 강씨 행적에 대해서는 증거조사 때 하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검사가 곧바로 “공소사실 이후의 행적을 신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이 어디 있느냐”며 응수, 양쪽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어 장기옥 변호사가 “재판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검찰이 직접 변호인단을 향해 발언하는 것은 법정 모독행위”라고 항의하자 재판부는 “예정된 검찰의 신문은 모두 그대로 진행하되 검찰은 발언절차에 관한 변호인쪽의 지적에 신경을 써 달라”며 사태를 수습하기도 했다.

강씨 입정때 일부서 박수

○...재판장인 노원욱 부장판사는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정 소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듯 방청객들에게 “법정질서를 지켜 달라”는 ‘당부의 말’을 특별히 3분여 동안 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번 자살방조 사건은 온 국민이 비상한 관심을 갖는 사건이므로 재판부에서도 엄정중립의 자세를 지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방청객들도 피고인이 출정·퇴정 때나 신문 때 박수를 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법정질서문란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곧이어 강씨의 입정때 일부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소란없이 재판이 진행됐다.

서의 필적이 동료 누구의 글씨와 비슷하다고 진술한 것이 뼈아픈 일로 남아 있다. 그후 그 동료는 형식적으로는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내용상으로는 유서대필혐의의 조사를 위해 구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준식 인권위원장님은 아무런 혐의도 없으면서 보복적 차원에서 구속을 당하셨습니다.

조사받는 중 우리나라 법원은 검찰의 말을 믿지, 피의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검사의 말에 나는 심한 허탈감을 느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짐으로써 그 동안에 피해받은 많은 사람들, 특히 김기설 동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2. 유서대필 조작사건 2차 공판(1991.9.11)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제2차 공판이 9월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서울형사지법 합의 25부 심리로 160여명의 방청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신상규, 송명석, 임철검사 등 유서대필 조작의 장본인들과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안부 검사 등 검사 4명과 이석태, 박연철, 김창국, 유현석 변호사 등 4명의 변호인이 참석하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총 17종에 달하는 증거물 중 -김기설씨의 유서, 주민등록본실신고서, 책표지, 업무일지, 수첩, 이력서, 카드, 편지와 강기훈씨의 화학노트를 증거물로 제시하였다. 또한 김기설씨의 가족들(셋째 매형 장병호, 아버지 김정렬, 고종사촌 이재구)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변호사 신문이 진행되었고, 11시30분 경 재판을 끝마쳤다.

강기훈 동지는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검찰조사 당시 회유와 협박 속에서 검찰의 유서대필 주장을 논리적으로 공박하기 어려웠던 데다 검찰이 제시한 전민련 사회국 부장 임무영 동지의 글씨가 유서의 글씨와 비슷하다는 느낌에서 '유서가 대필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면서 「그러나 임무영 동지와 맞대면한 뒤 곧 임무영 동지가 쓰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지금은 유서가 대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훈 동지는 또 「검찰은 나의 집에서 압수한 혁노맹 회의록과 혁노맹 관계자의 메모지를 제시하면서 '대검문서감정실이 연륜은 짧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보다 낫다. 우리는 회의록 일부와 혁노맹 관계자의 메모지 및 유서를 동일인이 쓴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두 문건의 작성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했는가 하면 임무영씨의 글씨가 송의여전 학생들이 제시한 김기설씨의 글씨와 똑같다며 임씨를 대필 용의자로 지목하는 등 잘못된 필적 판단으로 수사에 혼선을 보였다」고 말했다.

강기훈 동지는 이어 「검찰은 '유서대필을 시인하면 혁노맹 문건도 문제삼지 않겠다'는 회유에서 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들을 모두 공안관련 혐의로 잡아넣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자백'을 강요해 나머지 사람들을 구해야 겠다는 심정에서 거짓자백이라도 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다」고 말했다.

3. 유서대필 조작사건 3차 공판 (1991.9.25)

검찰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과 증인신청 가운데 상당부분에 대해 변호인단이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김기설씨의 매형 장병호씨, 홍성은 양, 국과수 직원 김형영씨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차로 김기설씨의 셋째 매형 장병호씨, 아버지 김정렬씨, 외사촌 이재구씨 등 3명을 3차 공판에서 신문하기로 했으나 김정렬과 장병호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이재구에 대해서만 증인신문을 했다.

4. 유서대필 조작사건 4차 공판 (1991.10.9)

10월 9일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열린 4차 공판에는 김기설씨의 아버지 김정렬씨가 나와 검찰의 신문을 통해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이 아닌 것 같다는 것과 유서 내용에서 큰누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유서가 대필된 것 같다는 요지의 증언을 했다. 다음에 나온 김기설씨의 셋째 매형 장병호씨도 김기설씨의 아버지와 같은 요지의 증언을 했다. 그러나 이 두사람 모두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가 아닌 막연한 느낌을 중심으로 증언을 했다.

오후 속개된 공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인 김형영씨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변호사 반대신문과정에서 증인은 감정기준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정대상 문서의 동일특징 비율이 70%이상이면 同一 필적, 45%이하 이면 相異한 필적, 70%-45%에 해당되면 異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감정했으나, 심리가 계속되면서 결국 감정결과라는 것이 유서와 같아 보이는 부분을 감정원이 지적하여 확대사진으로 첨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업무일지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유서와 동일필적으로 감정한 바 있는데 수사과정에서 업무일지가 3인의 필적으로 밝혀지자 이에 대해 유서와 달라보이는 다른 2인의 필적은 감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정했다고 시인함으로써 결국 국과수의 감정이 강기훈의 필적 중 유서와 비슷해 보이는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일반 카메라로 확대한 사진을 비교해 놓은 것임이 명백해 진 것이다.

더구나 끈질긴 변호사의 신문에서 강기훈의 필적에 있어서 전체적인 필획

개인판단 의존... '진실성' 시비 많아

과학수사원 유서 '대필' 감정 신뢰성 논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는 과연 1백%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본신자살한 고 김기철씨의 유서대필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전민련측의 팽팽한 공방전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적 부분이라 할 필적감정 결과의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씨의 여자친구 홍아무개씨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김기철씨의 유서대필 혐의의 직접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24일 알려짐에 따라 국과수의 필적감정 결과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유서대필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 남게 됐다.

동일인이 쓸 경우 시간이 지나거나 필체를 바꾸더라도 개인적 고유 특성 때문에 쉽게 동일인 필적으로 판별된다는 통념이 사실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적감정을 1백% 신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정작업 자체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확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체 국과수 등이 필적감정을 하는 방법은 감정할 필적들을 몇십배 이상 같은 크기로 확대한 뒤 '육안'으로 글씨의 특성 등을 관찰·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전체적인 글씨의 구성이나 배자의 형태, 글씨에 갖는 힘의 정도, 획 순서, 글씨의 조형, 필기구의 방향과 각도·간격 등이 종합적인 판단대상이다. 여기에 고정밀 인영필적판독기 등 첨단장비가 동원되기도 하지만 이들 기계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에 머물 뿐 최종

김씨와 강씨의 필적 등을 감정 의뢰해 나타난 결과도 이번 사건에서 국과수측이 오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충분히 엿보게 해주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김씨 수첩에 대한 필적감정에 이어 지난 23일 1. 김씨의 유서 2. 전교조 원 주지부 발행특의 김기철씨 글씨 3. 성남 '티올림' 발행특의 김씨 글씨 4. 김기철씨의 민중당 보고서 등 4가지 필적을 공인감정원인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 추가로 감정 의뢰한 바 있다.

감정을 맡은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이 내린 결론은 "이들 2, 3, 4. 필적과 유서와는 특정비율 상반으로 이동(異同) 여부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원측은 "유서와 가장 비슷한 필적은 2번 전교조 원주지부 발행특 글씨이고 그 다음이 3번 성남 '티올림' 발행특 글씨로 나타났으며 4번 김씨의 민중당 보고서가 가장 유서 필적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개인적 소견을 밝혔다. 즉 동일인 필적 여부에 대해 명확하고 확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김씨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사되어 있는데 비해 유서는 그 반대 방향이고, 또 유서의 'ㅎ'의 필법이 'ㅎ'이 더 많음에 비해 강기훈동지의 필적에서는 'ㅎ'과 같은 필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국과수 감정인 스스로도 실토했다.

이외에도 증인은 처음에는 감정문서에 대해 누구의 조언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양심에 따라 감정했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매번 감정의 퇴시 마다 담당 검사가 직접 와서 감정문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해주었다고 시인함으로써 감정에 있어서 검찰과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했다.

5. 유서대필 조작사건 5차 공판 (1991.10.23)

10월 23일 오전 10시 유서대필 조작사건 5차 공판이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4차 공판에 이어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52)에 대한 변호인 측 신문이 계속되었다.

김형영에 대한 신문에서 변호인은 국과수가 검찰에 보낸 감정서의 감정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근거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감정인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오만 방자한 태도로 자신의 허위감정을 은폐하려 했다. 이러한 감정인의 태도에 재판부 조차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감정인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동일하다고 판정한 감정에서는 서로 다른 부분, 相異하다고 판정한 감정에서 동일한 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 조차도 유서필적과 김기철동지의 가족이 제출한 선물책자 필적을 감정한 1차 감정서에서 대조문자 부족으로 異同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후 감정에서는 선물책자 필적이 더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대조문자 부족으로 보지 않고 유서와 동일하다고 판정을 반복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감정인의 증언내용이 극히 신빙성이 없는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담당실장 '허위감정' 구속 곤욕 치르기도 강씨 혐의 '유일' 증거... 흘림체 비교돼야

씨의 유서대필 사실은 용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이런 주장은 필적감정 자체가 절대적인 '과학성'과 '무오류성'을 갖고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적감정에 대해 1백%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른바 여지가 많으며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국과수의 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의 한 연구원은 "똑같은 사람이 쓴 글씨일지라도 필법 등을 달리하면 동일인 판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원종이에 '감정서'라는 글씨를 정자체와 흘림체로 써 보인 뒤 "직접 보는 앞에서 한 사람이 쓴 글씨이지만 이 두 필적을 감정해본다면 '감정불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실제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또 김씨의 정자체 필적과 유서가 전혀 다른 사람의 글씨로 보이며는 일반인의 시각과는 달리 "유사성도 많이 있으나 판정을 내릴 수는 없었던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런 설명은 필적감정 자체가 일반인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적인 감정 결과는 전적으로 '개인의 경험과 판단력'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판정 결과에 '개인적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감정 결과를 개인 판단에 기댄 수밖에 없는 특성 때문에 감정 결과의 옳고 그름은 법정 시비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수없이 많다. 특히 거액이 걸린 민사소송의 경우 감정인 자신이 허위 감정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까지도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실제 이번 강씨 자살사건 감정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도 80년 2월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되는 곤욕을 치르기도 할 만큼 감정의 정확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를 많이 안고 있다. 문서분석실장의 경우 결국 무죄가 입증돼 복직되긴 했지만 당시 감정 대상이었던 인장의 위조 여부에 대해 사설감정원측과 국과수측이 5대1로 서로 다른 판정을 내렸다는 대목은 '진실'에 부합된 감정이라고 단언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구속사건이 일어난 이후 국과수는 발생의 소지가 많은 민사소송상의 감정은 일결 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한겨레신문>이 자체적으로 사설 공인감정기관에

의 흘림체 필적은 곧 유서 필적과 '거의 동일하다'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번 사건에서 국과수측은 슬건 김씨의 흘림체 필적과 '우연히도' 비슷한 강씨의 필적을 김씨의 필적과 동일인 필적으로 잘못 판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현재 검찰은 김씨의 필적 두 가지를 추가로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해놓은 상태이지만 이들 필적이 모두 정자체여서 이번 '대필-자필'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확실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미흡한 상태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정자체와 흘림체를 대조할 경우 '감정 불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검찰이 김씨의 흘림체 글씨 확보와 감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미심쩍은 대목으로 꼽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결국 검찰은 앞으로 김씨의 흘림체 글씨를 빠른시일 안에 확보, 유서와 정밀대조를 실시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우 기자**

오후 2시 속개된 공판에서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홍성은양이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고 불참 하였다. 홍성은양은 편지에서 "검찰에서 강기훈씨와 대질하면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이미 채택된 상태이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 출두해 이미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잊혀져 가는 일에 대해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며 아물어가는 상처를 되새기고 싶지 않다"는 요지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시한번 소환해 보겠다고 했으나, 확실히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홍성은양의 증인 출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제출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드러내었다.

변호인 측은 홍성은양의 진술이 하나의 정황증거에 불과하기는 해도 그 진술내용은 재판부의 심증형성과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무려 100여시간 동안 억압적인 상태에서 조서가 꾸며진 만큼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조서를 살펴본 결과 조서내용이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만약 검찰이 홍양을 증인적으로 소환하지 못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야 하며 홍성은양을 변호인 측에서 또다시 증인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날조 조작 중단하고 강기훈을 석방하라!
 <유서대필 날조 조작 사건 제5차 공판 안내>
 *일 시: 1991년 10월 23일 오전 10시
 *장 소: 서초동 서울지법 417호 법정
 *공판내용: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홍성은양의 증인신문
 우리모두 재판에 참가하여 유서대필 날조 조작 사건의 진실을 두눈으로 확인합시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743-9127)

6. 유서대필 조작사건 6차 공판(1991. 11. 6)

11월 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6차 공판에서는 오전 10시에 홍성은씨에 대한 증인신문부터 시작 될 예정이었으나, 홍성은씨가 재판부에 편지를 보내 재차 증인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측과 변호인 측의 합의를 통해 11월 7일 보도진만 입회한 후 7차공판을 비공개로 열기로 결정하였다.

오후에는 변호인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증인들은 성남 「터사랑청

년학우회, 창립대회 방명록, 원주전교조 지회 개소식 방명록, 수원민청련 창립대회 방명록, 성남민청련 상황일지 등의 김기설열사 필적 증거등에 대해 그 필적이 김기설열사의 필적임을 진술하였다. 이 필적들은 누가 보아도 한눈에 유서 필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6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또 검찰의 유서대필 주장이 완전히 조작임을 밝혀 줄 새로운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였다.

▶ 속초 동우전문대 학내 폭력사건관련 녹취록 ◀

생전의 김기설 동지가 3월 경 속초 동우전문대 사건 진상조사 활동과정에서 홍성은씨와 함께 노트에 녹음테이프를 풀어 쓴 것으로써 이는 홍성은씨도 7차 공판에서 김열사의 필적임을 확인하였다.

▶ 김열사 분신당일 복사한 수첩복사본 ◀

검찰은 그 동안 전민련에서 제출한 김열사의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고, 절취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까지 동원하여 국민의 눈을 현혹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남으로써 완전 날조임이 드러났다.

이 수첩 복사본은 김기설열사와 성남에서 같이 활동한 동지들이 김열사 분신 당일인 5월 8일 연락을 위해 복사한 것으로써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원본과 동일한 것이다. 이 수첩 복사본이 제출됨으로써 강기훈동지가 5월 16일과 18일 사이에 연대에서 수첩을 조작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완전한 날조임이 증명된 셈이다.

구국단국 8500여 학우는 강기훈 선배님의 진실을 믿습니다. 진실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구국의 선봉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법대. 상대 학생회 일동

유서사건 항방가를 '결정적' 증거

강기훈씨 변호인단 새 필적자료 2종 제시

김기훈 항방가의 비밀수첩

7월 11일 11시 40분 10초 - 10시 40분 ->

※ 비밀수첩을 열람한 이...

김기훈 씨의 비밀수첩은...

김기훈 씨의 비밀수첩은...

1. 김기훈 씨의 비밀수첩은...

김기훈 씨의 비밀수첩은...

(홍성은과 김기훈이 공동작성한 노트)

(김기훈 동지의 유서)

도 되게 해야 합니다.

해제 되어야 합니다..

슬픔이나 아픔을 안겨주는

것도 꼭 라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나 아픔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이런 모두 하세가 되어 리앙되어

일상에서 노태우 정권을 없애

성공하면 민중들의 재취를 위한

이해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김기훈

이영희 031 437. 3335

465. 4309

문재복 466. 2354

496. 0362

최규남 0343) 66. 456

지영희 0343) 793. 3

김희태 809. 9752

김희태 931. 0417

박선동 032) 655. 431

032) 665. 973

남종현 0431) 4. 7591

이영희 031 437. 3335

465. 4309

문재복 466. 2354

496. 0362

최규남 0343) 66. 456

지영희 0343) 793. 3

김희태 809. 9752

김희태 931. 0417

박선동 032) 655. 431

032) 665. 973

남종현 0431) 4. 7591

7. 유서대필 조작사건 7차 공판 (1991. 11. 7)

그 동안 증인출석을 거부해오던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의 주요 증인 홍성은씨가 11월 7일 비공개리에 진행된 7차 공판에 나와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이 사건이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파렴치한 범죄적 행위였음이 다시한번 명백히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연행과 강압에 의해 받아낸 홍성은씨의 진술을 유서대필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까지 내는 등 호들갑을 떨어왔었다.

그러나 이번 홍성은씨의 진술번복으로 강기훈 동지가 검찰로 하여금 유서의 필적을 고 김기훈 열사의 필적으로 오인케 하기 위해 홍성은씨의 수첩에 김기훈 열사의 연락처를 적어 주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조작을 위해 꾸며낸 장식물이었음이 밝혀졌다.

홍성은씨는 이외에도 고 김기훈 동지가 생전에 숙초동우전문대학내 폭력사건과 관련 녹음테이프를 풀어쓴 노트를 변호인측이 제시했을 때, 녹취 작업을 홍씨 자신과 김열사가 함께 했으며, 그 노트의 필적이 자신과 김열사의 필적임도 확인했다. 또한 홍성은씨는 자신이 김기훈 열사로 부터 건네받아 전민련에 넘겨준 수첩에 대해 강기훈씨가 관심을 보였다라는 진술을 번복하며, 강기훈씨는 관심을 보인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진술때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필했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강기훈씨 집에서 압수한 편지(이 편지는 결국 강기훈씨가 쓴 것이 아니라 구속중인 혁노맹 관계

홍씨 검찰진술 번복



자가 쓴 필적이었음이 이미 밝혀졌었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명백한 사실을 놓고서도 흰것을 검은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날조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강기훈 동지에 대한 19일간의 고문수사는 물론, 홍성은씨를 비롯한 수심명에 달하는 참고인에 대한 불법·강압수사, 조작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에 대한 보복구속, 참고인으로 소환된 임무영 사회부장에 대한 별건 구속, 참고인 가족에 대한 협박 등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뿐만아니라 공권력의 힘을 빌어 허울좋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허위감정을 함으로써 많은 국민의 눈을 현혹시켜 왔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자신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쇼정권의 속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 유서대필 조작사건 8차 공판(1991.11.20)

유서대필 조작사건 제8차 공판이 1991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계속 되었다.

이날 이영미(강기훈 후배), 이동진(전민련 사회부장), 서준식(전민련인권위원장), 박경민(방송통신대 학생), 김병희(성남터사랑청년회), 임무영(전민련 사회부장), 최경환(전 성남민청련), 이효경(전 성남민청련), 고상만(동우전문대 학생), 이보령(승의전문대 총학생회장)등이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와 강기훈 동지의 무죄를 주장하였다.

강기훈씨 8차공판

변호인단, 김씨 채무각서 제출

각서
못인 김기설은
만약 김씨 못인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것은
없습니다.
1991. 11. 13
김기설 대표

아버지. 어머니 -
어찌이런 일인가.
한은 이해의를 안상했다들
하기에는 어디까지 의미가
생각됩니다. 어찌것 안변!
한도라는 것을 해오지 못했지요
- 김기설 -

김씨 각서와 유서

강기훈씨 변호인단이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김기설씨의 채무이행각서(왼쪽)와 김씨가 남긴 유서의 필적.

9. 유서대필 조작사건 9차 공판(1991.11.27)

유서대필 조작사건 제 9차 공판이 1991년 11월 27일(수)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변호인측 증인신문이 계속되었으

강기훈씨 필적과 '유서'는 다르다.

- 검찰, "외국인 감정결과 의미없다" -

며 증인으로는 이효경(성남민청련)과 오니시(일본 필적감정 전문가, 강기훈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감정한 사람)가 나왔다.

오니시씨는 이날 신문에서 "유서의 글씨가 김기설씨의 글씨이고 강기훈씨의 글씨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자신의 필적감정서와 관련해 검찰과 심한 공방을 벌였다. 오니시씨는 "감정한 글씨가 한글이고 필적중에 사본이 상당수 있으나 한글이라고 해서 특별히 감정에 어려울 것이 없으며 사본으로도 감정이 가능하다"면서 "나의 감정 결과가 맞다고 확신하며 유서가 강기훈씨의 글씨라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니시씨의 감정서에 따르면 강기훈씨는 받침 '리'자를 쓸 때 중간에 가로선을 긋는 반면 김기설씨와 유서 글씨는 중간선이 없기 때문에 유서가 김기설씨의 글씨라고 주장하나 강기훈씨 것에도 중간선이 없는 것이 상당수 나오며 유서와 김기설씨 글씨에 중간선이 있는 것도 발견된다면서 감정결과를 반박했다.

검찰은 또 오니시씨가 ▲ 김기설씨와 강기훈씨 글씨에서 달리 나타나는 특징으로 구별하고 있는 'ㅂ'자와 모음의 종선 방향의 두 형태가 감정서 내용과 달리 두사람 모두의 글씨에 혼재되고 ▲ '아버지'를 '아비지', '한빈도'를 '한빈도'로 잘못 판독하고 감정하는가 하면 ▲ 감정대상 문건 중 송의 여전 메모에는 받침 '리'자가 6개 있음에도 감정서에는 4개 밖에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 등 여러 곳에서 잘못 감정된 부분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점들을 들어 "결국 오니시는 한글의 체계를 전혀 모르고 자음이나 모음의 숫자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완전히 잘못된 감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오니시씨는 "감정당시 한국인을 보조사로 채용해 도움을 받아 가면서 감정했다"면서 "특정 자음이나 모음의 수를 잘못 계산하고, 감정서의 일부 예외가 존재하는 부분을 생략하고 분석결과를 기재한 점은 인정하나 대체적인 필법으로 보아 나의 감정결과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오니시씨는 또 국과수 감정사진에 첨부된 사진자료(글씨 확대 대조 사진)를 기초로 자신이 만든 10개 가량의 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반박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서필적 강씨것 아니다"

강기훈씨 9차공판 일본인 감정가 법정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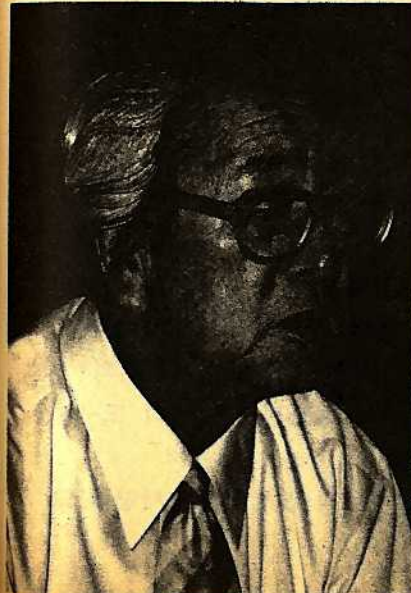
유서 필적은 김기설씨와 강기훈씨 글씨에서 달리 나타나는 특징으로 구별하고 있는 'ㅂ'자와 모음의 종선 방향의 두 형태가 감정서 내용과 달리 두사람 모두의 글씨에 혼재되고 ▲ '아버지'를 '아비지', '한빈도'를 '한빈도'로 잘못 판독하고 감정하는가 하면 ▲ 감정대상 문건 중 송의 여전 메모에는 받침 '리'자가 6개 있음에도 감정서에는 4개 밖에 없다고 기재하고 있는 등 여러 곳에서 잘못 감정된 부분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김기설 동지의 유서)

보고서는 **銀** 표이 예

① 압력이 **중** 듯했다. 보내는 편지들은
 ② 많이 들고, 성격은 많이 명랑해 졌다는
 ③ 아버지 **한빈도** 뿐이냐. **한빈도** 운동장 **ㅂ**자의
 모음 위에 **중** 들었어. 진술에도 그 자취만이
 잘 지내고 있나.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중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단정해서,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한빈도**

강기훈씨의 목증편지



영어 감정도 해본 '문서감정의 匠人'

오니시씨는 48년부터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고문서감정을 담당하다 79년 정년퇴직한다. 이른바 '문서감정의 匠人'이다. 재직 때부터 도쿄경시청에 문서감정을 조언해온 공로로 74년 감사장을 받기도 했으며, 현재는 개인사무소를 차려놓고 경시청 등의 의뢰를 받아 연간 30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오니시씨는 이어 국과수 감정서에서 감정에 사용된 도구라고 밝힌 현미경, 확대투영기, 비교확대기, 고정밀 비교확대기 등 4종의 도구가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에 사용되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현미경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필적감정에 쓰이지 않으며 특히 비교확대기, 고정밀 비교확대기는 필적감정이 아닌 도장감정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은 자정까지 14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며 이날 못다한 변호인의 신문은 다음날인 28일 특별기일을 잡아 계속하기로 하였다.

10. 유서대필 조작사건 10차 공판(1991.11.28)

이날 공판은 하루전에 열린 제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니시씨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이 미처 이루어 지지 못했기에 9차 공판에 이어서 변호인의 신문이 계속되었다. 이날 신문에서 오니시씨는 감정에 있어서 극히 부분적인 실수와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자신의 감정결과에 결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유서는 강기훈이 아닌 김기설씨가 쓴 것이라는 자신의 감정결과는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증언을 마쳤다.

11. 유서대필 조작사건 11차 공판(1991.12.4)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1심 결심공판인 이날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기훈 동지에 대해 자살방조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국과수의 필적감정과 김기설씨의 여자친구 홍성은씨 등 관련자 진술, 김기설씨의 수첩조작 등으로 볼때 강기훈씨가 김기설씨의 분신자살을 도와주기 위해 유서를 대필한 것이 분명하다”며 “강기훈씨의 반국가적, 반체제적 성향으로 볼 때 강기훈씨가 동료의 생명까지 혁명의 도구로 사용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강기훈동지에게 적용한 법조항은 자살방조죄(형법252조, 사람을 교

사하거나 방조해 자살케 한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이적단체인 『혁명의 불꽃』, 『혁명적노동자투쟁동맹』에 가입한 혐의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이다.

한편 변호인단의 김창국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불신의 시대가 낳은 비극이며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에 유서대필의 일시 장소가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는 철저하게 검찰의 의도대로 이뤄졌고, 감정결과 외에는 유서대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강기훈 동지의 무죄를 주장했다.

강기훈 동지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이 재야의 도덕성을 훼손시키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며 “결코 유서대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기훈씨 7년 구형



『유서대필 사건 조작』의
장본인인
서울지검 강력부 전 부장검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 논고문(요지)

김기설의 유서가 강기훈에 의해 대필 됐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의 증언 ▲전민련이 김기설의 것이라고 제출한 수첩의 필적감정 결과 강기훈의 것으로 밝혀졌고 전화번호란의 절취선 불일치 ▲김기설의 여자친구 홍성은의 증언 ▲강기훈의 목비권 행사와 불합리하고 모순된 진술 등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자살방조행위는 이미 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실행행위를 용의하게 하는 것으로 그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고 정신적, 무형적 방조도 인정되므로 유서대필 행위가 자살방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법리상 합당하다.

또 유서를 대필함으로써 분신자살을 미화하고 사후 장례의식등 모든 문제를 「강경대 사건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해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것이 분명하다.

유서대필의 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나 다른 기재 사실과 종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적합한 공소가 아닌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볼 수 있다.

공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제출한 여러가지 필적은 과연 그것이 김기설의 필적인지에 대해 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변호인단이 필적감정에 반대했고, 일본인 감정가 오니시씨의 감정결과는 신빙성과 증거능력에서 의심스럽다.

강기훈은 단국대학교 재학시 삼민주위위원장으로 활약하는 등 반체제 활동을 했고 전민련 가입, 이적단체 '혁명의 불꽃' 그룹에 가입하는 등 급진적 과격 변혁 노선인 민족민주혁명이론에 심취한 좌경혁명분자이다.

이같은 전력과 성향을 볼때 목적을 위해선 동료의 생명까지 혁명도구로 사용하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행위는 놀라운 일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다.

비록 「분신의 배후세력」에 대해 소상히 밝히지 못해 유감스러우나 이사건을 계기로 이 사회에 다시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적 충정을 모아 강기훈을 징역 7년,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한다.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 검사 신 상 규, 공안부 검사 안 종 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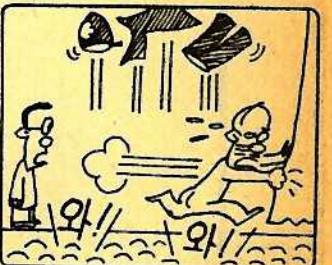
미주알 (929) 김원호



나대로 (3287) 이흥우



미주알 (931) 김원호



변론요지서

1991년 12월 4일

-- 목 차 --

- 제 1. 총 론
 - 1. 유서는 누가 쓰는가
 - 2. 이 사건의 배경 - 왜곡의 서막
 - 3. 되돌아본 공소사실
 - 4. 검찰의 증거조작 주장에 대하여
- 제 2. 사 실 론
 - 1. 김기설군의 가족관계
 - 2. 검찰의 주장사실에 대한 반론
 - 가. 이른바 '대책회의'에 대하여
 - 나. 홍성은 제출메모(압수물 7-2)
 - 다. 홍성은의 수첩에 써준 김기설 전화번호
 - 라. 5.7밤의 전화
 - 마. 업무일지조작 주장에 대하여
 - 바. 수첩조작 주장에 대하여
 - 사. 승의여전 메모에 관한 진술조작 주장에 대하여
- 제 3. 증 거 론
 - 1. 검찰측 증거
 -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 1) 감정인
 - 2) 감정서 요약
 - 3) 검찰의 의도에 따른 감정
 - 4) 필적감정의 비과학성
 - 5) 감정회보의 누락 등
 - 6) 해독불능의 감정결과
 - 7) 감정소견의 근거
 - 8) 사진자료를 통해본 감정의 부정확성
 - 9) 감정소견의 변경
 - 10)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
 - 11) 수첩조작에 대한 감정

12) 유서와 피고인 필적의 이동여부

13) 한겨레 신문 감정의뢰

나. 홍성은의 진술

다. 기타 검찰측 증인

1) 장병호

2) 이재구

2. 결백의 증거들

가. 5.7일 밤의 전화

나. 검찰의 필적오해

다. 수많은 필적자료 및 관련 증인들

라. 수첩복사본

마. 수첩의 전화번호 기재 방식

제 4.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

제 5. 결 론

제 1. 총론

1. 유서는 누가 쓰는가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면 무엇인가의 얘기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겠다고 결심한 사람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없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서'를 남깁니다.

그러나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의 '유언장'을 대필한다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자살자의 '유서'를 남이 '대필'하여 준다는 얘기를 우리는 일찌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유서를 쓸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남에게 유서를 대필하여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는 이미 자살을 포기한 사람이며, '유서는 내가 써 줄테니 빨리 자살하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자살방조자가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유서'를 '대필'하여주었다는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아있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아마도 강기훈 피고인은 자살자의 유서를 대필하였다는 처음이자 마지막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구나 피고인이 대필하였다고 하는 유서의 주인공인 고 김기설군은 글을 모르는 문맹자도 아니고 글씨를 쓰지 못할 신체적 결함도 물론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기설군은, 수도공고 3학년 때 자퇴하고 대학입학 검정고시에 합격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고, 제대후 몇몇 회사를 다니며 민주화운동에 종사하여 왔으며, 방명록(중 제 1, 3, 10호)등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기설군은 글씨쓰기를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남에게 유서를 대필케 한다던가 남이 써준 유서를 안고 분신하였다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일이고, 유서의 내용도 특별한 문장력을 요하는 것들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들

이 평소 즐겨 쓰는 문장입니다.

2. 이 사건의 배경 - 외국의 서막

이 사건을 흔히 '검찰의 권위'와 '재야의 도덕성'이 결린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불신시대가 낳은 하나의 비극'이며 궁극적으로는 '거짓'과 '진실'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26에 발생한 강경대군 치사사건은 그 동안 지리멸렬 상태이던 재야세력들을 다시 결집케 하는 계기가 되어 그 다음날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규탄과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고 연일 정부규탄시위가 도처에서 벌어지는 한편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등이 분신한데 이어 5.8. 08:07경 김기설군이 또 분신을 합니다.

검찰이 어떤 동기에서 상식을 초월한 이 '유서대필'사건의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사기록과 신문보도등을 종합하여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김기설의 가족으로부터 제출받은 '누님 우리 혜정이 잘 키워주세요 -삼촌 기설-'이라는 필적과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및 전민련에 요청하여 제출받은 업무일지등을 5.13.에 감정의회 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인은 5.15.자 감정의회 회보에서, '1)유서와 업무일지는 동일필적, 2)김기설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와 주민등록 분실신고서는 동일필적이니, 유서와 이들 필적과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정서와 속필 및 필기구에 다른 변화점을 알 수 없어 異同여부 논단불가'라고 감정하였습니다.

위 제1차 감정결과에 의하면, 유서가 대필되었다기 보다는 김기설 본인의 필적임이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업무일지의 대부분이 김기설의 필적이고, 대조문자의 동일 특징수가 45% 내지 60%일 경우 '異同여부불명'으로, 60%에서 70%의 범위내인 경우에는 다른 특징을 참고하여 동일필적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통레이프로(별첨 정창용 '문서감식의 연구' P.20 및 증인 김형용의 진술) 가족제출 필적 2매 및 분실신고서와 유서와는 동일특징수가 45%에서 70%의 범위내라는 결론이어서 동일필적으로 인정할 여지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검찰은, 5.15.에 제 2차로 강기훈 피고인이 1986년도에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김기설이 1991.2.경 여자친구인 홍성은에게 준 메모를 유서와 함께 감정뢰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5.17.자로 위 진술서 및 메모는 모두 유서와 동일 필적이라는 회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메모는 김기설이 "내가 낙서한 것인데 잘 된 것 같다. 읽어보라"고 하면서 홍성은에게 준 것이므로 (수사기록 256쪽 참조) 김기설군 본인의 필적이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고 감정결과가 위 메모도 유서와 동일필적 이라는 것이 이 시점에서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음날 『유서와 업무일지의 필적은 같았으나 김기설이 누나집에 보낸 카드의 필적과는 달랐다. 전민련 관계자들이 김기설 분신직후 검찰수사에 대비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유서필적 위조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서둘러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기설군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 유서가 '相異한 필적'이라고 감정된 바 없고, 더구나 전민련 관계자들이 소위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수사기록 어디를 뒤져보아도 김기설군 분신 직후 전민련 관계자들이 수차 '대책회의'를 열어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5.18.의 검찰 발표시까지는 '유서대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어떻든 위 검찰 발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의 시국안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재야운동권에는 치명타를 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만, 성급한 5.18. 발표를 계기로 검찰의 '왜곡열차'(歪曲列車)는 멈출 수도 되돌아 올 수도 없는 궤도에 진입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검찰이 위 발표를 뒤로 미루고 좀더 신중한 조사를 계속하였더라면, 강기훈 피고인을 구속한 뒤 한때 임무영에게 유서대필의 혐의를 두고 허둥대는 해프닝도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사실과의 겹을 매꾸기 위하여 무리한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며, 나아가 사상 초유의 『유서대필』이라는 이 재판도 없었을 것입니다.

불신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되돌아 본 공소사실의 요지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991.4.26.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하여 재야운동권의 반정부투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김기설이 그 투쟁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분신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의와 결행을 용의하게 할 의도로, 1991.4.27.경 부터 같은해 5.8.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하여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 장례식 등 모든문제를 서준식, 김선택 등 전민련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의하게 도와주어 김기설이....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픽션'임을 우리는 압니다.

피고인이 유서를 써주었다는 일시,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김기설군이 분신자살한다는 생각을 언제하였다는 것인지, 또 피고인은 김기설군의 그와같은 생각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공소장은 물론 수사기록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유서를 써주는 행위가 어떻게 그 자살결심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것이 된단 말입니까? 김기설군이 분신자살은 결심하였지만 유서가 없어서, 유서를 쓸 능력이 없어서 분신자살의 결행을 망설이고 있었던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또는 사후 장례식이 걱정되어서 망설이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또 공소장은 『김기설은 1982.경 광탄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라고 적시함으로써 김기설군의 '지식

과 문장력 부족'이 유서대필의 동기인양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기설군은 서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3년 중퇴후 대입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이며, 검찰이 압수한 이력서(압 제10-1)에도 '81.3.3. 수도공고 입학, 83.4.20. 동교자퇴'라고 명시되어 있고, 아버지 김정렬도 검찰에서 '큰 누나가 시집간 후에는 서울로 올라와 기설이가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 제1054쪽) 왜 검찰이 '광탄고 1년 중퇴'라고 적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이제까지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인 '픽션'으로 야간 법정시간의 기록까지 세워가며 공방을 계속하여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 25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공소제기로서 같은 법 제32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검찰의 증거조작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전민련 측에서 제출한 업무일지나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승의여전 학생회 간부들이 공개한 김기설군의 메모(변호인제출 증 제 5호)나 방명록에 기재된 김기설군의 필적(변호인 제출 증 제1, 3, 10호)에 대하여도 조작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증거관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와같은 검찰의 주장은 전민련을 믿지 않는 선입견에서 비롯되었거나 잘못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억지로 밖에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경대군 치사사건 후 결성된 범국민대책회의에 법률자문을 위하여 몇 차례 참석하였던 변호사들과 전민련 관계자들 및 관련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5.18.에 '유서가 대필되었다'라고 발표할 때까지는 일련의 분신자살 사태에 대하여 검찰이 그 배후 조종세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였지 유서의 '대필' 혐의에 관하여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였고, 검찰에서 전민련측에 김기설의 필적을 제출하여 달라는 연락을 하였을 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김기설의 책상위에 있던 업무일지를 가져와 5.11. 연세대학교에서 검찰에 건네주었던 것인데, 5.18. 검찰의 발표에 놀란 전민련에서는 그때서야 유서가 김기설의 필적임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찾게 되었고, 수첩(압수물 11-1)을 5.20에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 수첩만 보면 검찰도 유서가 대필되었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업무일지도 수첩도 모두 조작되었다고 강변하고, 승의여전 학생회 간부들이 가져온 김기설의 메모에 대하여도 조작의 혐의를 두고 어린 여학생들을 밤샘추궁하는 등 철저히 불신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김기설군이 과거에 관계하였던 성남민청련등에 연락하여 김기설군의 필적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그때부터는 수집되는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변호인단 이를 넘겨주어 법원에 제출케 된 것입니다.

재판부의 오해가 있으실까 염려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 4일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27)씨의 결심공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큰아들로서 의연하려 애썼으나 면회온 어머니의 험악한 얼굴을 구치소 면회실 이증유리창을 통해 보는 순간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징역 7년의 구형을 받고도 담담한 표정과 자세로 최후진술하던 강씨가 '어머니'를 언급, 눈물을 보이며 목이 메자 이날 4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재판중 줄곧 곳곳이 앉아 있던 강씨의 어머니도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주변에 앉아있던 가족과 친구후배들도 '후후'소리내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

석태 변호사도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중 한명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단을 대표해 김창국 변호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고인 강기훈



“건전한 상식이 이기길 바랄 뿐”

의 승리가 아니라 건전한 상식의 승리다"라며 장장 2시간10분간의 변론을 끝내자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남이 볼 세라 뒤내느라 애썼다. 지난 5월초 범국민대책회의 법률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전민련과 처음 인연을 맺고 강씨 사건이 터지자 '자연스럽게' 변론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간신히 울음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난 3일간 밤을 꼬박 새며 변론요지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의 정신과 육체의 모든 것을 사로 잡았던 이 사건이 변호인의 손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복도에 나와 담배를 깊숙이 빨며 안정을 되찾은 '인권변호사' 이씨는 "자살하려는 친구의 유서를 대필해 줄 수 있다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발상이 놀랍기만 했다"며 "불신의 시대가 낳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사회의 건강함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길우 기자)

제 2. 사 실 론

1. 가족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김기철의 어머니가 계모이므로 유서내용상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없고”, “3명의 누나와 자형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서가 아버지와 어머니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김기철군의 가족관계에 비추어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는 듯이 기재되어 있고 김기철의 세째 매형인 장병호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장병호가 김기철의 세째누나 김화용과 결혼한 것은 1985년으로써 그 이전의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을 잘 알리가 없고, 동인은 김기철군 큰 매형과 둘째 누나 이름도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동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기철군이 평소 누나라고 따랐던 증인 이효경의 진술에 의하면, 김기철의 어머니가 영안실에서 많이 울면서 진심으로 김기철군의 죽음을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기철군이 고등학교에 다닐무렵에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으므로 집을 떠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누나들이 김기철군을 양육한 바는 없습니다. 김기철군의 아버지도 이 법정에서, 김기철군이 어버이날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을 위해서 꽃다발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기철군의 여자친구 홍성은 5.7. 밤 김기철군의 부탁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내일이 어버이 날인데 찾아가 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어버이 날에 관한 통화 내용은 유서의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당시 김기철군이 누나 등을 특히 마음속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서내용과 관련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2. 검찰의 주장사실에 대한 반론

가. 이른바 ‘대책회의’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1991.5.18. 발표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홍성은, 이영미, 김진수등이 모여 피고인의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기록 어디에도 지금까지 피고인이 나머지 세사람을 만나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세사람 등이 만나 것은 3,4회 있었으나 이들이 만나게 된 경위는 처음부터 세사람이 한꺼번에 만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예컨대 5.10. 추모모임이 끝난 후 또는 5.12. 김기철군 장례식 후 나머지 세사람이 피고인을 불러 만났을 뿐입니다. 그것도 추모모임이나 장례식에 관계된 얘기였고, 주로 김기철의 분신 후 상심해 있는 홍성을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점과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을 비롯한 세사람이 만났을 때 김진수가 “내가 박래전 분신 사건때나 단국대학교 최덕수 분신 사건 때 장례를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번 김기철 분신 사건 때 최대의 실수는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이다.”라고 하였다. 홍성은의 진술을 인용하여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선 위 진술 중 “이번 김기철 사건 때 최대의 실수는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이다.”라는 부분은 “증인을 인터뷰에 내보낸 것이 선배로써 후배를 배려치 못한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홍성의 증언에 의하여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홍성은은 이어서 장례식 운운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은 모르겠습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진수는 홍성이 증언한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홍성의의 진술을 종합할 때, 설사 위 장례식 운운부분과 최대의 실수 운운부분이 같은 날에 한 말이라 하더라도, 이 말의 전체적인 맥락은 평소 홍성을을 후배로써 아껴온 김진수가 5.8. 김기철 분신직후 극도로 상심해 있는 홍성을을 기자들의 인터뷰 공세에 시달리게 한데 대한 선배로서 미안한 감정에서 한 말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달리 김진수의 말이 유서대필 은폐로 해석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이영미의 증언에 의하면 김진수의 말 중 ‘최대의 실수’ 운운부분은 5.10.의 장례식 후 장례식 분위기와 관련하여 한 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영미의 진술이 당시의 상황에도 부합됩니다.

나. 홍성은이 제출한 메모(압수물 7-2)

“그때 나의 마음은 패배와 좌절로 어둠과 연기로 자욱하여...”로 시작되는 메모(압수물 7-2)는 홍성은이 1991.2.18. 10:00경 「슈베르트」 카페에서 김기설군으로부터 “내가 낙서한 것이데 잘된 것 같다. 읽어보라”고 받아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메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서와 동일필적이라고 감정되었습니다. 이 메모에 관하여 검찰은 지금까지 피고인이 쓴 것을 김기설군이 가지고 있다가 홍성은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홍성은은 “의혹과 혼돈”속에서 진술한 1991.5.17.의 검찰 조사시에도 “김기설이 자기 글씨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다만 자기가 잘 쓴 글이라 생각된다며 읽어보라고 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위 메모가 “가상의 내용을 감상적으로 쓴 낙서”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나타난 홍성은의 진술을 종합할 때, 위 메모는 현실의 일과는 무관한 낙서로써 김기설군이 2.18. 홍성은에게 들이 만난 자리에서 주었다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위 메모가 피고인이 쓴 것이라기 보다는 김기설이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훨씬 자연스럽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김기설이 위 메모를 줄 때는 1991.1.20. 처음 만난 이후 꼭 4번째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수사기록 250면)

다시말하면 두사람이 이제 막 이성간의 교제를 시작한 때로서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때입니다. 특히 김기설군의 경우는 피고인에게 줄라 여자친구를 소개받은 자리여서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유기적으로 고려할 때 「위 메모가 본래 피고인이 작성한 것인데, 김기설군이 이를 가져다가 잘 쓴 메모라고 하면서 홍성은에게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상상력의 산물일 뿐입니다. 특히 홍성은은 그때까지 만 해도 김기설보다는 피고인과 친구 이영미를 함께 더 자주 만나고 있을 때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여자친구에게 그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남자가 쓴 메모지를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가장해서 읽어보라고 하며

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피고인이 이 메모를 쓴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경로로 김기설의 손에 들어 가게 되었는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피고인과 김기설은 전민련에 같이 일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은 총무국, 김기설군은 사회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로 내근인데 반하여 김기설군은 바깥에서 대부분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나이로 보나 전민련 경력으로 보나 김기설군의 선배 됩니다. 따라서 김기설군이 피고인이 쓴 메모를 몰래 훔쳐올리는 없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김기설군에게 주어야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하면 무엇보다도 감상적인 낙서에 불과한 메모를 피고인이 김기설군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시, 어떻게든 본인의 좋은 모습을 드러내고자 애쓰는 김기설군이 이제 막 교제하기 시작한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쓴 것처럼 가장하여 가지라고 주었겠습니까. 어떻게 이튼구성을 해도 피고인이 위 메모를 작성하였다는 검찰의 논리는 기괴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홍성은은 김기설군이 메모를 쓰는 것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성은이 기억하는 두 사람의 대화내용, 교제의 기간, 교제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김기설및 홍성은과의 관계등을 종합할 때, 이 메모는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 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선입견을 가지지 아니하고 당시 상황을 머리에 그려볼때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성은이 위 메모를 검찰에 제출했을 때 검찰은 보다 신중하고 냉정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육안으로 보기에 도 위 메모가 유서필적과 흡사하자 위 메모는 피고인이 쓴 것으로 바로 단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합리성과 객관성및 상식을 뛰어넘는 발상과 착상이 이 사건 전반에 깔려있는 검찰 논리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100년전 프랑스에서 있었던 저 유명한 「드레퓔스 사건」에서, 독일과 내통하는 비밀문서를 보고 딱 한눈에 드레퓔스가 쓴 것이라고 단정한 프랑스 군부의 놀라운 직관력(?)과 어딘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체의 골격과 진행양상이 어찌면 그렇게도 100년전의 드레퓔스 사건과 흡사한지 정말 아연할 따름입니다.

다음 메모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메모는 피고인이 아니라 김기설이 쓴 것이 임이 분명합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단히 감상적으로 쓴 것임이

다. 실제의 일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상념을 가상적 상황에 투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이나 문자의 형태를 볼 때 한낱에 쓴 것으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쓰여진 시기도 「새해 이제 27」이란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새해를 앞둔 연말에 쓰여진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 글에서 전체적으로 풍기는 느낌은 대단히 회의적이고, 반성적인 성품의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이든 어떻든 이성에 대하여 간절한 동경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본래가 회의적인 성품도 아니고 감상적인 성품도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여자친구 이영미와의 관계는 교제한 기간이 오래되고 서로 장래를 약속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이므로, 두 사람의 교제 관계에 비추어 볼때 위 글의 내용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녀의 사려깊은 마음”운운부분은 두사람 사이에서는 낯선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기설군은 1965. 11. 27. 생 이므로 1991년 이면 「새해 27세」가 되지만, 피고인은 28세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서 이제 몇세 된다고 할 때, 이때 나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만 몇세가 된다고 나이를 세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을 보더라도 위 메모는 김기설군이 쓴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 메모가 유서필적과 같다는 것은 검찰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피고인의 결백은 증명되었습니다.

다. 홍성은의 수첩에 써준 김기설군의 전화번호

홍성은이 유서대필 여부에 관하여 의혹을 품게 된 것은 기록에 의하면 5.17. 검찰조사때 부터였습니다(수사기록 432면, “그 당시 저는 김기설의 유서가 그 자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고”라는 홍성은 진술부분 참조).

따라서 홍성은이 검찰에서 처음 조사 받을 때, 검찰이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것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은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1991. 5. 13. 조사에서 홍성은은 그의 수첩을 제시하면서 3. 20. 메모란 부근의 글씨와 약도, 뒤 모눈종이 부분에 쓰여진 “김기설 743. 9127 f) 742. 8289”라는 것이 김기설이 써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위 진술은 앞서와 같이 유서대필의 의혹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홍성은은 실제 사실과 달리

말한 이유가 없던 때였습니다. 따라서 위 약도 및 전화번호 기재는 김기설이 쓴 것임이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1991. 5. 17. 조사시 홍성은은 위 전화번호 기재 부분은 김기설이 아니라 피고인이 5. 10.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당시 홍성은은 그동안 불안한 상태에서 몇가지 밝히지 않았던 사소한 것에 관해서 상당한 추궁을 받았고, 밤을 세운 상태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받았으며(중간에 증거 보전절차까지 들어있다.), 검사가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제시한 압수물 9-1(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으로 된 편지)이 진짜 피고인이 쓴 것이라고 오인한 상태에서 동 필적(9-1)이 유서와 똑같지 않느냐는 검사의 반복된 질문에 홍성은도 같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김기설 및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의혹과 혼돈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변경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전화번호 기재 부분은 현재 누가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5. 10. 피고인이 쓰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앞서의 전화번호는 검찰이 그동안 피고인이 유서대필을 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혐의점으로 제시 했던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김기설의 분신직후인 5. 10. 홍성은을 만나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써놓은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사기록 437면 “그 당시 진술인은 김기설의 유서가 자필이 아니고 바로 강기훈의 글씨였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받게 될 경우 마치 김기설이가 생전에 진술인의 수첩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 놓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는가요”라는 검사 질문 참조)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우선 홍성은이 5. 10. 피고인이 쓰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하였으므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홍성은이 김기설군의 분신 자살 후 피고인을 만난 것은, 분신 후 연대내에서 분향하면서 잠깐 서로 보았던 것이 한번, 5. 10. 카페에서 둘이 만난 것이 한번, 같은날 저녁 및 5. 12. 저녁 이영미, 김진수와 같이 만난 것 등 모두 4번입니다. 5. 10. 피고인이 홍성은의 수첩에 전화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김기설의 분신 후 피고인이 위 전화번호를 홍성은의 수첩에 기재한 일은 결코 없었다는 것입니다. (홍성은은 이 수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나 말해 준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 하고 있다) 그리

고 김기설 군의 분신전에 피고인이 분신후의 일에 대비하여 홍성은의 수첩에 위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결국 "5.10. 피고인이 김기설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는 홍성은의 증언은 피고인이 위 김기설 전화번호 기재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서대필 여부에 관하여 전혀 짐작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유서대필 혐의가 피고인에게 미치고 있으리라고 전혀 상상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이(1991.5.17.자 홍성은 자술서 "맨처음 조사 받을 때 제출한 쪽지가 기설씨가 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썼고, 그것이 유서를 쓴 사람과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했다"는 부분 참조). 피고인이 쓴 것을 김기설이 썼다고 진술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점은 홍성은이 김기설군의 여자친구로써 결혼상대로 까지 서로 생각했던 바를 감안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기설군은 그무렵 전화번호 뿐만아니라 홍성은 수첩내의 3.20. 메모란 부분에 서로 만날 장소의 약도까지 그려주고 장소이름을 썼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이 약도가 김기설 본인이 쓴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부분에 대하여 필적감정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홍성은이 이 부분까지 제시하며 사실을 숨기려 했겠습니까. 1991.5.13. 검찰에서 홍성은이 한 김기설 전화번호 기재 부분은, "의혹과 혼돈"속에 빠졌던 1991.5.17. 진술과는 달리 사실대로 진술한 것입니다.

홍성은은 당시 "약도는, 김기설이 1991.3.경 위 수첩을 저에게 주었는데, 약속장소를 저의 집과 자신의 자취집인 모래내의 중간지점인 신촌으로 하자고 하며 신촌 북지다방을 아느냐고 하였다가 제가 모른다고 하자 버스안에서 적어준 것이고, 전화번호는 1991.4.경 어느 카페 안에서 적어준 것으로 모두 제 앞에서 직접 적어준 것입니다."라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김기설 전화번호는 김기설군이 홍성은의 앞에서 직접 적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 기재가 유서와 같다는 사실은 검찰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유서

는 김기설이 썼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위의 김기설의 수첩 부분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화번호를 기재할 때 국번호 다음에 예컨대 529-7238식으로 "-"를 넣어 쓰는데 반하여, 김기설은 국번호 다음에 "."를 찍어쓰는 습성이 있는바, 홍성은의 수첩에 기재된 전화번호 역시 "743.9127"로 기재되어 국번호 다음에 "-"가 아닌 "."이 찍혀 있는 걸로 보아 김기설이 쓴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라. 5.7. 밤의 전화

홍성은은 1991.5.7. 밤 10:30경 김기설과 헤어진 후 11:30경 공중전화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다. 당시 홍성은은 피고인이 전화를 받자 "기훈이 형 왜 사무실에 안 나왔느냐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성은아! 성은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하기에 ... 아마도 술주정 때문인가 생각하고 "괜찮다"고 말한뒤 "김기설씨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연락해 달라며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말해주었습니다."라고 1991.5.17. 검찰조사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록 436면),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홍성은의 이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김기설군의 분신자살 결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조한 관계로) 그 여자친구인 홍성은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한 뜻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은 정말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만일 피고인이 김기설군의 분신자살을 방조하고 공소사실대로 은밀히 부축하고 있었다면 이는 정말로 극단적으로 교활하고 도덕적으로 파탄된 성격의 소유자임이 분명한데, 도대체 그 여자친구인 홍성은에게 그 전날 왜 사무실에 안 나왔느냐, 그리고 건강상태를 묻는 통화에 대하여, 대뜸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발표하였으니 미안하다라고 말할리 만무한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당시 김기설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부분은 피고인은 무슨 전화번호인지 몰라 기억이 없다고 하는바, 홍성은의 진술대로 김기설군 아버지의 전화번호인을 분명히 밝혔다고 하더라도 대화의 맥락상 앞의 "미안하다"는 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 홍성은의 목소리가 작은 점, 밤 늦은 시각에 처음 홍성은의 전화를 받은 점, 공중전화이기 때문에 감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통화시간이 극히 짧았던 점등을 종합하면, 당시의 통화내용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 피고인의 기억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아가 5.7. 밤 홍성은이 피고인의 집에 전화건 경위는 이 사건 정황에 있어서 피고인이 김기설군의 분신자살 결심을 사전에 물랐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부분 뒤에서 따로 항을 두어 밝히기로 합니다. 5.7. 밤의 전화에 관한 검찰 주장 역시 근거없는 것이며, 오히려 피고인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 업무일지 조작주장

검찰은 지금까지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이 검찰의 요청을 받고 김기설의 필적으로 제출한 전민련의 업무일지에 대하여 동일지는 유서필적과 같으나, 피고인이 마치 김기설이 쓴 것처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전민련 업무일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3장으로 되어 있는바, 첫 제장이 중간에 잘려 있는 부분을 가리켜 실은 떨어져 나간쪽에 김기설이 진짜 쓴 일지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찢어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일지가 말로 피고인의 무고함을 보이는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분명한 자료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일지는 서준식이 처음 검찰로부터 김기설 필적자로 요청을 받고 특별한 생각없이 김기설이 작성하던 것을 검찰에 제출한 것입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업무일지와 유서가 동일인이 쓴 것이라는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 왔습니다.

업무일지가 1인이 쓴 것으로서 피고인이 썼다는 검찰의 주장은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한 이후 5회의 조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검찰은 매 조사 때마다 업무일지와 유서를 피고인 앞에 펴 보이고 양자가 동일인이 쓴 것이니 만큼 업무일지는 피고인이 김기설이 쓴 것처럼 조작하지 않았느냐고 계속해서 추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도 피고인은 물론 업무일지에 관하여 알고 있는 전민련 관계자 누구도 업무일지는 김기설 1인이 작성한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진출두한지 11일째 되

는날인 1991.7.5.에 이르러 뜻밖에도 업무일지가 세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 졌습니다.

즉 업무일지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피고인은 반복하여 검사로부터 심하게 추궁받았으나, 어쩔 수 없이 자꾸 업무일지를 보던중 피고인은 업무일지 맨 앞장의 글씨가 전민련 동료인 이동진의 글씨고, 둘째장의 파란볼펜 글씨로 쓰여진 "4/9 4월혁명 기념대회준비"가 마찬가지로 전민련 동료인 임무영의 글씨임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두사람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전민련 내의 총무국에서 일을 보면서 전민련 실무자들로부터 각자가 작성한 초고를 받아 타자하여 컴퓨터 문서를 정리하고 발송하는 일을 맡고 있었던 관계로 각자의 글씨를 어느 정도 눈여겨 알고 있었던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앞장이 이동진의 글씨이고, 둘째장의 일부분이 임무영이 쓴 것으로 밝혀지자 검찰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업무일지가 이미 유서와 동일인이 쓴 필적으로 감정되었으므로, 업무일지를 쓴 사람이 유서를 쓴 사람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업무일지는 김기설이 아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전체를 다시 써서 검찰에 제출하게 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김기설 본인이 쓴 것처럼 꾸미는 마당에, 바꿔 말하면 업무일지가 유서와 동일필적으로 보이도록 의도하고 있는 마당에 3인의 필적이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제출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임무영이 쓴 부분은 별도로 독립된 장이 아니고 업무일지 한 가운데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업무일지 내에 이동진, 임무영의 필적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당시 검찰은 업무일지가 3인이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앞장은 이동진이 쓰고, 나머지 두장은 피고인이든 다른 사람이든 동일인이 내쳐 끝까지 쓴 것으로 논리를 폈습니다. 만일 나머지 2장을 동일인이 썼다면 비록 처음 업무일지가 유서필적과 동일하고 1인이 썼다는 감정결과는 잘못 되었지만, 최소한의 논리구성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은 앞서의 "4/9 4월 혁명기념대회 준비"가 임무영이 쓴 것

임은 확인되었으므로, 둘째장과 나머지 세째장 모두 임무영이 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991.7.5. 자술서에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업무일지의 복사본을 보고 업무일지 2번째항 중하단의 ‘4월 혁명기념대회 준비’가 다른 것들과는 다른 필적이며 필기구도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필적은 다른 것이 없고, 한사람의 필적(맨 앞장을 제외하고)으로 보였으며, 필기구가 다르다는 것은 정확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번째, 3번째 장은 1번 혹은 2번에 나누어 한꺼번에 기재되었음을 원본을 보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는바, 당시 검찰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 적고 있음이 쉽게 이해됩니다(이부분 자술서는 피고인이 도대체 업무일지를 쓰거나 조작하지 않았다는데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그가 스스로 김기설이 쓴 것처럼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면, ‘4월혁명 기념대회준비가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 시점에서 검찰은 적어도 업무일지가 피고인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그렇다면 앞서의 논리와 같이 둘째장, 세째장은 한사람, 임무영이 쓴 것으로 결론짓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피고인의 2회 공판진술중 “하루는 부장검사가 화가난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승의여전학생들이 김기설의 필적이라 하여 가져온 메모와 무슨 노트를 책상에 내던지며 ‘봐라, 똑같지 않느냐’라고 소리쳐서 그 노트를 보니까 임무영의 노트였고 육안으로 보기에 승의여전 메모의 글씨와 너무나 같아서 한동안은 임무영이 유서를 대필한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부분 참조) 이때부터 검찰은 임무영이 이 사건 유서대필의 진범으로 단정하고 “현상금을 걸고 잡으러 다녔습니다”(피고인의 2회 공판진술). 말하자면 이때 검찰 스스로도 피고인에게 유서대필 혐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결국 임무영은 1991.7.6. 안기부 요원에 의하여 강제연행되어 사실상의 유서대필 피의자로서 만 이틀동안 혹독한 신문과 추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업무일지 둘째장에서 앞서의 “4/9 4월혁명 기념대회준비”가 동인이 쓴 사실만 확인되고 동인은 유서를 결코 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임무영은 위와 같이 혐의가 없었으면 곧 석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상태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등으로 엉뚱하게 구속

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마땅히 피고인을 무혐의로 석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피고인이 임무영을 끌어들이려 했다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죄의 멍에를 계속 씌우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업무일지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유서를 쓰지 않았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이 업무일지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필적을 꾸미려고 조작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유서와 같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3인의 필적이 섞여 있는 것을 김기설의 필적으로 제출할리 만무 합니다. 즉 상식적으로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든 어디든 만일 필적감정을 하면 3인이 쓴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설령 실제 3인이 썼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조작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1인이 다시 써서 한사람의 필적으로 만들어 제출하게 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인의 필적이 있는 그대로 제출해도 결국 유서필적과 동일 필적으로 판명되어 그 의도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아마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3인의 필적을 구별해 내지 못할 정도로 감정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정도의 놀라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만 할 것입니다(물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업무일지와 유서가 모두 1인이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상은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요컨대 업무일지는 이동진, 임무영외에 김기설이 생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서준식 전민권 인권위원장은 김기설이 주로 업무일지를 작성했음을 알고 그대로 검찰에 제출한 것뿐입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진실로 향하는 해석은 자연스럽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허위로 향하는 해석은 복잡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유서는 업무일지라는 문서처리 양식을 직접 만들고, 그 대부분을 기록한 김기설 본인이 쓴 것입니다. 업무일지 조작시비를 둘러싼 과정에서 이 단순한 진실은 놀랍도록 명쾌하게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고인이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자백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찾아낸 이 진실, 이동진과 임무영의 필적이 눈앞에 드러나는 과정은 불가사의한 느낌마저 갖게 합니다.

바. 수첩 조작주장에 대하여

1991. 5. 20. 전민련은 검찰에 김기설이 생전에 사용하던 수첩을 제출하였 습니다. 이 수첩은 5.7. 저녁 김기설이 홍성은에게 건네 준 것으로서 홍성 은이 가지고 있다가 5.8. 점심무렵 전민련 실무자인 원순용에게 전달한 것 입니다. 이 수첩은 그동안 연대내의 범국민대책회의 사무실, 전민련 사무 실내에 보관되어 있다가, 검찰의 유서대필 혐의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자 1991. 5. 19. 찾아서 검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수첩이 처음 검찰에 제출되자 아직 정밀한 감정이 실시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첩이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5.25. 경에 이르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수첩중 떨어진 형태로 끼워져 있는 전화번호 기재 부분 3매가 수첩의 잔류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감정결과를 통보했 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금까지 위 수첩은 조작된 것이라고 강변해 왔습니 다.

여기서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찰의 수첩주장이 과연 논리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우선 위 수첩은 외관상 상당기간 사 용된 흔적이 있는 것으로서 새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첩이 본래 완전하게 제본된 것이라고 가정할 때(제본과정에서 파본이 생기거나 종이가 덧 끼워져 있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우리는 이 수첩이 완전하게 제본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전화번호 기재부분 종이 한장과 뒤의 모눈종 이 3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주로 필기구의 색깔에 관한 홍성은의 진술과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위 수첩은 김기설의 수첩이 아니라 본래 피고인의 수첩인데 그 위에다 피고인이 김기설의 수첩 을 보고 그안의 내용을 피고인의 수첩에다 옮겨 썼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필기구의 색깔기억에 관한 홍성은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과 절취선 이 일치하지 않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엉터리라는 점에 관하 여는 뒤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검찰의 수첩조작논리만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검찰의 수첩조작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김기설이 5.7. 저녁 홍성은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설의 수첩을 전화번호 기재쪽이 3장(또는 4장)이 떨어져 끼운 상태로 홍성은에게 주었다.

(2) 홍성은은 이 수첩을 김기설 본신후인 5.8. 전민련 관계자에게 전달하였 다.

(3) 피고인은 홍성은이 전민련에 건네준 이 수첩의 전달과정과 보관된 장소 를 알고 있었다.

(4) 피고인은 김기설의 수첩과 같은 형태의 1991년 전민련 수첩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기의 수첩을 마치 김기설 의 것인 것처럼 조작하려고 마음 먹었다.

(6) 1991. 5. 8. 오후부터 1991. 5. 20. 검찰에 제출될 때까지 사이의 어느날 피고인은 김기설 수첩을 빼내었다.

(7) 피고인은 1차 피고인의 수첩여백에 김기설의 일정에 관계된 메모를 옮겨 적었다.

(8) 이어서 김기설의 떨어진 전화번호 부분 3매를 옮겨 기재하려고 하였으 나, 피고인의 수첩 전화번호란은 이미 꽉차있거나 적어도 3매이상 기재할 공간이 없었으므로, 다른 수첩을 도용하기로 했다.

(9) 그런데 당시 상황이 급하여 새수첩은 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쓰던 전민련 수첩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보통 처음 전화번호기재 부분은 누군든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례이므로, 여백이 있는 둘째장부터 차례대로 석장을 옮겨썼다(김기설 수첩의 전화번호란 제일 첫장이 없는데 대 한 이유이다).

(10) 피고인은 피고인 본래의 수첩에다 이와 같이 다른 수첩에서 뜯어 거기에 김기설의 전화번호란을 옮겨쓴 3장을 떨어진 채로 끼워 넣었다.

(11) 이렇게 하여 수첩조작이 완성되었다. 수첩조작에 동원된 수첩은 본래 의 김기설 수첩, 피고인의 수첩, 제3의 전민련 수첩등 모두 3개가 동원되었 다.

(12) 피고인은 이 조작된 수첩을 보관장소에 도로 넣었다.

(13) 전민련은 이 수첩을 김기설의 것이라 하여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게 3개의 수첩이 조작에 동원된 관계로 전민련이 김기설의 수첩이라고 제출한 수첩물체와 떨어진 채로 끼워져 있는 3장의 절취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검찰의 논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감탄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리야 말로 이 사건이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애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맹목적 사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검찰의 위 추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려면 수첩절취선이 과연 일치하지 않는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전체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피고인이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는 1991년도 전민련 수첩을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왜냐 하면 기왕에 조작의 의도가 있다면, 검찰이 주장하는 바의 절취선 불일치 문제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과연 배웠는지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새수첩에 처음부터 김기설의 수첩에 적은 것을 필기구 색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하고, 떨어진 부분 3장도 바로 같은 수첩에서 3장을 뜯으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검찰에 제출된 수첩이 기왕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최소한 몇군데 정도 피고인 자신의 스케줄임을 나타내는 대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먼저 첫번째 전체에 관하여 보면,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상식에서 어긋나 있는 것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만일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고, 실제의 김기설 수첩의 존재를 알고 있어 진짜 수첩이 공개되는 경우 그의 유서대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하였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증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수첩을 찾아내어 폐기시키거나 다른 곳에 감춰두는 일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적극적으로 유서를 김기설이 썼음을 수첩조작을 통해서 보이도록 기도한다면, 이는 상당히 지능적이고 교활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가능한한 최대한 남이 쉽게 구별못하게 수첩조작을 시도하였을 것입니다.

김기설 수첩이 홍성은에게서 전민련측에 전달된 때인 5.8. 오후부터 5.20. 무렵까지 10일 이상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수첩은 서류함에 보

관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그는 새 수첩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새수첩을 구한 연후에야 수첩을 찾아내어 조작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쓰지 않은 1991년도 전민련수첩은 전민련 사무실내에도 상당수 있고, 피고인은 내근자인 관계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수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새수첩을 선택하지 않고 그가 쓰던 수첩을 선택했다는 이 전제는 사회통념상 대단히 무리한 가정입니다.

두번째로, 피고인이 만일 피고인의 수첩에 김기설의 수첩을 옮겨 적었다면 최소한 피고인 자신의 스케줄이 상당부분 수첩 어딘가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검찰은 정말 철저하게 수첩에 기재된 메모전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첩에 기재된 내용중 피고인에 관한 내용이 정말인지 확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하나도 피고인에 관한 것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바, 김기설의 수첩에 기재된 모든 메모는 김기설에 관한 것이 밝혀 졌습니다. 검찰의 침묵은 이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수첩이 본래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발을 디딜데가 없어 졌습니다.

검찰은 위 수첩의 글씨가 유서와 완전히 일치하니까, 수첩이 조작되었으며, 조작에 동원된 수첩이 3개나 된다는 웃지 못할 괴기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은 분명히 김기설의 것입니다. 김기설의 수첩이 분명하고 그 글씨가 바로 유서글씨와 같은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유서대필 시비는 벌써 종결되었어야 마땅했습니다.

사. 승의여전 메모에 관한 진술조작 주장에 대하여

1991. 4. 18. 김기설은 속초 동우전문대 정연석학생 분신사건과 관련하여 알게된 승의여자전문대학교 총학생회장 이보령 등에게 시민궐기대회 등의 일정을 직접 쓴 메모를 주었습니다. 당시 이보령등이 모금을 하겠다고 하

여 모금이 쉽게 될 수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대중집회 일정을 적어준 것입니다. 이 보령은 위 메모를 보관하고 있다가 1991.5.20. 옥시 송의여전 학보사에 김기설의 원고가 남아 있는지 문의하는 이동진의 전화를 받고 동인에게 위 메모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령은 위 메모 원본을 복사하여 부회장이인 최수미에게 2매를 맡긴후(최수미 자술서 참조), 원본을 가지고 명동성당에 가서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을 만나 원본을 전달하고 다음날 기자회견전에 다시 받아 원본을 공개한 후 이를 서준식에게 다시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 원본의 사본은 그후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으면서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이보령이 기자회견시 공개한 메모가 동인이 4.18. 김기설로부터 받은 바로 그 메모이고, 또 검찰에 제출한 사본이 바로 그 원본을 복사한 것임은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이보령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중 검사 신상규의 물음 "그후 91.5.20. 저녁에 증인은 명동성당에 가서 김기설로부터 받았다는 메모지라는 것을 전민련측에 넘겨주었다가 다음날인 5.21. 오후 다시 되돌려 받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였지요"에 대하여 "예" 하고 답변한 부분 참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김기설이 4.18. 적어준 그 메모지가 언론에 공개되고 그 사본이 검찰에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자회견 전날에 메모지 원본이 서준식에게 건네준 사실을 처음 조사당시에 말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들어 진술조작 운운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메모지 원본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검찰도 이를 확인한 이상, 이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과연 그 메모지 필적이 유서필적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만일 메모지 원본이 바뀌거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문제삼으면 되고, 메모지 원본이 분명한 것이라면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지 해서 유서와의 동일성 여부를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진술을 달리 하였다고 해서 메모지 원본이 어디로 사라지거나 변조라도 되어 있습니까. 차라리 메모지 원본이 조작되었다고 할 것이지, 이 사건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앞의 진술에만 매달려 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원본을 인정하면서도 진술조작만 부각시킵니까.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잔피만 부리고 치졸해 졌습니까.

제 3. 증 거 론

1. 검찰측 증거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

(1) 감정인

검찰은 이 사건에서 모두 10회의 감정의뢰를 하였고, 보충질의를 1회하였습니다. 감정결과는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 실장인 김형영 명의로 작성 보고 되었습니다.

김형영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감정회보는 문서분석실의 감정요원 4명이 모두 심의하여 결론을 내린 것이되, 주로 증인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2) 감정서 요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김형영이 중심이 되어서 한 이 사건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의뢰 및 회보요지

* 1차의뢰(5.13) - 012032

유서2매, 김기설 가족제출필적 2매, 주민등록 분실신고서1매, 업무일지 3매, 책표지 필적 1매(국민연합 김기설님)

* 1차의뢰회보(5.15)

·유서와 업무일지는 동일필적
·가족제출 2매, 분실신고서: 동일필적,
단 유서와는 유사점. 차이점이 공존, 정서와 속필, 필기구에 따른 변화점 알수 없어 이동여부 논란 불가

* 2차의뢰(5.15) - 012296

* 2차의뢰회보(5.17)

피고인 진술서 2매, 유서, 김기설이 홍성은에게 준 메모	유서와 모두 동일 필적
* 3차의뢰(5.21) - 012751 유서 2매, 피고인 진술서, 피고인 옥중 편지	* 3차의뢰회보(5.29) 유서, 진술서는 원본이나 편지는 사본- 사본은 특징현출 상태가 약하여 미세한 특징을 비교 검사 어려워 이동는단 불가
* 4차의뢰(5.21.) - 012752 수첩 1권, 피고인 진술서, 김기설 주민 등록분실신고서	* 4차의뢰 회보없음
* 5차의뢰(5.23) - 013041 유서, 분실신고서, 이력서, 누나선물책 메모, 김기설 친구 안혜정이 받은 편지, 카드	* 5차의뢰회보(5.25) ①유서 ②분실신고서 ③이력서 ④책메모 ⑤편지봉투, 내용 ⑥카드봉투, 내용 ⑦수첩 감정결과 : ①은 싸인펜속필, ②내지 ⑥은 전체적으로 정서, ⑦은 좁은란에 정서형태와 싸인펜 속 필형태의 차이가 있어 변화상태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조자료로서 부적합하나, ②내지 ⑥은 동일필적으로 사료되고, ②내지 ⑥과 ①⑦은 정서와 속필상의 변화상태 알 수 없으나 상이필적으로 사료됨.
* 6차의뢰(5.25) - 013245 수첩, 분실신고서, 이력서, 책메모, 위 편지, 카드	* 6차의뢰 회보없음
* 7차의뢰(5.24) - 013052 수첩절취선 일치여부	* 7차의뢰회보(5.25) 절취선 불일치 3매의 여러곳, 연필기재 문자필에 강한 필압형태 나타나 있으나 그 필압 아래에 있어야 할 필압흔적 관찰안됨

* 8차의뢰(5.27) - 013378 유서, 수첩, 피고인 진술서	* 8차의뢰회보(5.29) 동일필적
* 9차의뢰(5.28) - 013499 유서, 수첩, 홍성은제출 메모, 화학노트 피고인 진술서	* 9차의뢰회보(5.29) 동일필적
* 10차의뢰(6.27) - 016452 유서, 수첩, 일터에서 90, 화학과 당시 공책, 피고인 진술서(85.11.18) 3매, 피고인 진술서(85.11.22) 4매, 향소이유서, TWO TAC 13매, WHAT IS 9매	* 10차의뢰회보(7.4) 동일필적
* 보충질의(5.27) 절취선 일치 여부 감정결과에 대한 보충질의	* 7차회보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5.29) 잔류형태 3매정도, 1매는 길게 잔류, 2매는 상단에 부분적으로 돌출된 부분이 잔류함

(3) 검찰의도에 따른 감정

여기서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감정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사건 감정을 했어야 마땅합니다. 김형영도 이에 대하여 처음 변호인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 하였습니다.

- ▲문: 필적감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감정인은 감정의 대상이 되는 필적자료에 관하여 감정에 앞서 의뢰자측 으로부터 필적자료의 경위, 작성시기, 작성방법 등을 묻거 듣지 않고 오직 제시된 필적자료의 내용과 형상에만 집중하여 감정하지요.
- ▲답: 예
- ▲문: 증인은 이건 필적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검찰측으로부터 감정목적물인 필적자료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압수경위 및 배경 등을 들은 바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증인은 이견 각 필적감정서를 작성할 때까지 검찰측을 비롯한 누구의 조언이나 설명을 들은 바 없이 오직 증인에게 제시된 필적자료만에 의하여 증인의 경험과 양심에 따라 필적감정을 행하였나요.

▲답: 예
그러나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감정의 중립성을 말하면서도 실제 있어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저하게 검찰의 의도에 맞추어 감정을 하였습니다.

▲문: 그런데 증인이 한 감정사항은 위 유서필적과 다른 나머지 필적여부의 이동 여부로 변경되어 있어 본래의 감정의뢰사항과 다르게 감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각각이동 여부를 감정여부하려면 복잡하므로 검사에게 전화해 “언어야 할 목적물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유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그렇다면 유서와 다른 것들과의 이동여부를 감정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여 그렇게 감정한 것입니다.

▲문: 증인은 위 업무일지가 한사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3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는 사실을 아나요.

▲답: 예
▲문: 증인은 어떻게 위 사실을 아나요.

▲답: 검사가 얘기 하였습니다.

▲문: 검사가 어떤 얘기를 하였나요.

▲답: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으니 동일한 부분만 감정대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문: 4매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나요.

▲답: 검사로부터 감정할 무렵에 들었습니다.

▲문: 검찰에서 의뢰할 때 추가자료가 책자 글씨와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얘기를 했나요.

▲답: 예, 그리고 감정도 하여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 답변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김형영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제시받으면 오직 그 자료에 집중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검사와 연락하여 스스로 판단해야 될 사항까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감정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검토에 나아갈 것도 없이 이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증거가치가 없습니다.

(4) 필적감정의 비과학성

필적감정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의뢰자에 따라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도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언제나 옳은, 누구에게나 타당한 과학의 범주에 속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점은 상식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김형영도 이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문: 개인의 숙련도와 능력에 따라 같은 사건에 관한 필적을 감정하는 때에도 경우에 따라 감정결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지요. 답: 예, 문: 이견 필적감정의 결과도 1+1=2 또는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되는 것과 같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명백하고 움직일 수 없는 결론이라고 보이어렵고, 감정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이 사건 필적감정결과와 일치 않을 수도 있는가요. 답: 예. 등 참조).

필적 감정이 본질적으로 과학성이 결여된 관계로 대학 또는 전문기관에서 필적감정에 관한 전문적인 학과 또는 강좌가 없고,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시험제도 등도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감정결과에 관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김형영의 경우도 1980년경 허위감정죄로 구속되어 복역한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김형영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동일사안에 대하여 3-4명이 감정을 하여 증인과 다른 판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김형영은 상급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동인과 다른

판정을 한 사설감정인들이 대체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결과가 서로 상반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필적감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김형영에 대한 무죄판결에 의하면 2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원 이인환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것으로 보이는바, 위 이인환은 검찰이 역시 참고자료로 제출한 한겨레신문사의 의뢰를 받아 감정한 이인환 바로 그 사람으로 보인다. 이인환은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근무하면서 김형영과 같은 소견을 내어 김형영을 감옥에서 풀어 나게 하였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김형영과 상반되는 감정결과를 내놓고 있는바, 이것은 필적감정의 비과학성과 개인 및 입장에 따른 편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이인환의 감정결과에 대하여는 뒤에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필적감정은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그 감정결과의 모든 과정은 누구에게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다른 객관적인 입장자료 없이 필적감정 결과만에 의하여 어떤 결론을 단정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외에 다른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의 혐의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이 사건의 핵심에 관한한 거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는 홍성은의 진술 하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건 감정결과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찰의 이건 공소는 대단히 무리하게 유지되었음이 분명합니다.

(5) 감정회보의 누락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정에 있어서 감정인은 감정의뢰인과 감정의뢰 및 감정목적물에 대하여서만 서로 연관이 있고, 감정인은 오직 감정의뢰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있어서 모두 10회의 감정의뢰 및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감정회보도 마땅히 11회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위 4차의뢰 및 6차의뢰에 대하여는 회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

형영은 “검사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회보와 묶어 보냈다고 하면서도, “감정 완료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또 감정의뢰를 하면 반드시 독립된 문서로서 서무계에 접수인이 찍혀야 하는데도 “문서는 일일이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인이 “검사의 양해”에 따라 두건의 감정회보를 다른 감정회보와 함께 묶어 보냈다는 것은 동인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동인은 각각의 감정이 끝나면 감정물은 바로 검사가 와서 가져 갔으며, 검사가 연구소에서 보관해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호모순되는 진술은 감정과정 전체가 김형영이 독립적으로 했다고 보다는 검사의 양해와 편의에 따라 감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점에 있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건 감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6) 해독 불가능의 감정결과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사건 감정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감정방법” 이라고 기재한 부분과 “감정소견”입니다. 감정방법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정하였느냐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8차례의 감정결과를 살펴 볼 때 감정방법은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현미경, 확대투영기, 비교확대기, 고정밀 비교확대 투영기 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필의 구성과 배자의 형태... 직선적이고 곡선적인 필의 특성 및 속련과 미속련 차이, 자음과 모음의 특징, 개인의 특성, 잠재습성 등을 주시검사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비교확대기, 고정밀 비교확대투영기등은 필적감정이 아니라 인영감정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일반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또 한결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나머지 감정방법도 언제나 실제로 그렇게 각 특성을 주시검사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각 개인의 필적이 그 잠재적 습성이나 개성의 표현이 모두

다르고, 필적자료의 질이나 양도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각각의 감정마다 감정방법도 일률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필적감정에도 사용되지 않는 도구들 까지 열거하며 온갖 감정방법을 수행한 것처럼 나열한 것은, 이건 감정이 과연 필적자료의 특징에 맞춰 세심하게 이루어졌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감정방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감정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논리적 추론에 해당하는 감정소견은 정말 누가 보기에든 설득력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건 감정을 보면 앞서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감정방법에서 몇가지 항목을 따와 동일필적이라든가, 다른 필적이라든가로 기재하고 있어서 도무지 어떻게 해서 감정결론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필적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우선 글자를 가로 또는 세로로 쓰는 방향에서의 특징 여부 및 유사여부를 보아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각 글자와 글자, 그리고 서로 연결되는 모양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예컨대 글자의 쓰는 방향이 서로 같거나 다르다면 어떻게 어떤 방향에서 유사점과 상이점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글자에서의 필법의 특징도 짚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는 전혀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예시가 없습니다. 바로 결론을 내려놓고 뒤에 참고자료로 사진을 붙여 놓았을 뿐입니다.

붙여는 사진도 전혀 설명은 없고, 다만 다르다거나 같다고만 표시하였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건 감정결과는 도대체 합리적인 분석이나 비판을 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옳으면 무조건 옳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러한 감정결과를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론만의 기재는 감정인에게 편할지 모르지만, 감정결과가 어떤 추론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당혹스

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일 본인 증인 오니시 요시오(大西芳雄)의 감정서들은 제3자가 보기에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항목과 설명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7) 감정소견의 근거

김형영의 증언에 의하면 동일인이 비슷한 시기에 쓴 글이라 해도 모든 필법의 특징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100퍼센트 동일하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고 감정목적물의 모든 글자와 글자 또는 자음과 모음을 비교하여 각 글자등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양자에서 확률적으로 유사한 비율로 존재하는 경우 보통 필적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필적감정에 있어서 동일필법의 비율이 70%이면 同一 필적, 45% 이하면 相異한 필적, 45-60%면 異同식별 불능, 60-70%면 동일, 불능중택일한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김형영은 이에 따라 이건 감정의 경우 동일한 필적이라고 판단한 때는 동일필적 비율이 70% 이상인 때였으며 상이한 필적이라고 판단한 때는 동일필적 비율이 45% 이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동일필적 비율은 한눈에 그 비율을 알거나 직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매 감정마다 어떠한 감정방법을 사용하던 특징 그룹을 분류하고 여기에 일정정도의 수학적인 계산을 거쳐 70%이상 또는 40%이하로 판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대비되는 필적자료에서 종선의 필적을 비교하여 본 결과 이러한 방향으로 필법상의 특징을 보인 경우는 양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이고, 저러한 방향으로 필법상의 특징을 보인 경우는 어느 정도라는 등으로 반드시 검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이러한 검토없이 동일필적 비율이 70%라고 판정하였다면 이는 ‘나는 감정을 엉터리로 하였다’는 말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이점에 관하여 김형영은 이건 감정에 있어서 한눈에 보고 감정한 일은 없으며, 분명히 동일필적 비율이 70% 이상일 때 동일필적으로, 45% 이하일 때 상이필적으로 감정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위와 같은 확률상의 비율을 얻기 위한 사전조사 과정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감정서 어

디에도 그가 위와 같은 합당한 검증과정을 거쳤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다만 이러저러한 자료를 비교하여 본 결과 동일내용의 문자에서 문필구성과 배자의 형태등에서 특징적인 상사점이 발견되므로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감정조건에 대하여 그가 정말 감정을 수행한 것인지에 관하여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이점에 관하여 몹시 궁금하여 김형영에게 그렇다면 동인이 근무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문서분석실에는 혹 근거자료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지 물어 본바, 그는 뜻밖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다면 이건 필적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필법상의 유사비율 문제는 모두 증인의 머리속에서 보고 계산하고 현재 또한 증인의 머리속에만 기억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 본바, 놀랍게도 “그당시 계산하고 분석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은 기억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그가 초인적인 계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 복잡한 필적감정의 여러 감정방법을 행하면서 동일 필적 비율 70% 이상 또는 45%이하로 판정하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또 70% 비율은 구체적인 숫자의 비율대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가 제대로 감정을 하였으면 당연히 70% 이상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75% 또는 80% 정도로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70% 이상이 되어 동일 필적으로 판정했고, 45%이하가 되어 상이필적으로 판정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영이 중심이 되어 한 이견 감정은 정말 수수께끼에 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감정서 말미에 붙인 사진만 보아 가지고는 그가 감정을 행함에 있어서 대체 어떤 필법의 형태와 종선의 방향에 관하여 유사점을 찾아 검토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형영은 검사신문에서 관례적으로 비율관계를 감정서에 표시 안한다고 하나, 그렇다면 동인의 연구실에는 그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야 할텐데 보관하지도 않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동인의 이 말은 나는 유사비율을 측정할 바가 없다는 대답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동인이 70%이상이면 동일필적으로 감정하고, 45% 이하이면 상이필적으로 감정했다는 말은 믿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동인은 이런 유사비율을 측정할 바가 없이, 오직 동인의 경험에 의거한

직관에 의거하여 이런 감정을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 감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8) 사진자료를 통해 본 감정의 부정확성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김형영은 확률에 의한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의 직관에 따라 감정을 행하였고, 그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얼마간의 사진들을 감정서 뒷부분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들에서 그가 표시한 동일하다고 보는 부분들도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 보면 보통사람의 눈으로도 그의 판단이 반드시 옳은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예를 들면 그가 보낸 감정서 10차회보에서 첨부된 사진을 보면 주로 유서와 피고인의 진술서중 동일 필법으로 보이는 부분을 확대하여 찍어 놓았습니다. 동인이 어째서 첨부된 사진자료들이 유서와 피고인의 진술서중 동일 필적으로 보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지만, 대체로 특정부분의 모음이나 자음 또는 그 연결과정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듯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깊게 보면 그가 오직 특정 부분만 보려고 했지 글자의 전체적인 필세나 끝맺음, 쓰는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즉 여러 요소로 나누어 보면 그가 동일필법으로 찍어 놓은 글자들은 오히려 대부분 상이한 필법의 글씨로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따라서 그가 첨부한 소수의 사진자료에 의하더라도 그의 판단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9) 유서와 김기설 가족이 제출한 책포지 글씨 및 김기설의 주민등록본실신고서에 대한 감정소견의 변경

검찰은 1991.5.1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서2매,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 김기설의 주민등록본실신고서 1매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991.5.15. 유서필적과 업무일지 필적은 상호 동일한 필적이며,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 주민등록본실신

고서 필적은 상호 동일한 필적이거나 유서필적과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정서와 속필, 필기구에 따른 변화점을 알 수 없어서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고, 유서필적과 책표지 필적은 대조문자 부족으로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회보해 왔습니다.

즉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및 주민등록분실신고서 필적과는 서로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다는 소견이고, 그 이유는 유서는 속필체 다음 두 필적은 정서체로서 구별이 곤란하고 필기구가 달라 이동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소견은 김형영의 법정 증언에 의하여도 뒷받침 되어 일용 수 공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즉 동인은 “한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쓴 것이라 해도 속필체, 정서체, 횡서체, 종서체, 초서체 등으로 필체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인의 필적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와 주민등록분실신고서를 쓴 바로 그 사람이 유서와 같은 필기구를 사용하여 유서와 동일한 필체, 즉 속필체로 다시 써서 유서와 대비하여 판단하지 않는 한 위 감정소견은 바뀔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형영이 작성한 1991.5.25. 감정서 회보(수사기록 539면)를 보면 뜻밖에도 유서와 두 필적이 서로 상이한 필적이라고 감정결과가 변경되었습니다.

5.25.자 감정서를 보면 위 두 필적을 포함하여 김기설의 편지등의 필적이 모두 유서와 다른 필적이라고 결론지어 있습니다. 동 감정서에는 “이 모든 필적과 유서 및 수첩과는 기재된 형태가 정서로 기재된 형태와 싸인펜에 의하여 속필로 기재된 형태의 차이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조자료로서 부적합하지만, 현재에 나타난 상태에서 대조한 바 일부 받침과 연결부분 등에서는 다수의 차이점이 관찰됨”이라고 그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결과는 앞서의 감정결과와 명백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즉 앞서의 유서와 가족들이 제출한 필적 2매 및 주민등록분실신고서의 필적에 관하여 서로 이동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속필과 정서의 차이, 필기구의 차이’에 의한 판별이 불가

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속필과 정서의 차이 및 필기구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한 감정결론이 달라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1.5.25.자 감정서에도 여전히 “정서로 기재된 형태와 싸인펜에 의하여 속필로 기재된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감정을 하지 못한 요소에 있어서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혀 감정의 조건이 변화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결론을 달리한 것은 명백한 허위감정이며 이걸 감정전체의 신빙성을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형영은 이점에 관하여 추가된 대조자료가 많아져 감정결론이 변경된 것처럼 증언하고 있으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추가된 자료가 정서체이고 또 유서와 같은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종전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와 주민등록분실신고서는 글자수도 많아 상식적으로 추가자료가 더 필요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자수가 적을 때는 개인특징을 단정할 수 없지만 자료가 추가되면 개인특징을 대조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여 마치 종전에는 글자수가 적어 이동는 단 불능으로 감정한 것처럼 증언한 것은 거짓말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두번째 감정을 의뢰하면서 추가자료가 책자글씨와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여, 사실상 감정결론을 검찰의 의도에 맞게 유도했습니다. 더욱이 김형영은 “대조자료로써 부적합하지만, 현재에 나타난 상태에서 대조한 바 상이한 필적이라고 사료됨”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대조자료가 부적합하면 감정을 유보해야지 어떻게 상이한 결론을 단정지을 수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그는 변호인신문에서 “편지에는 술을 먹고 쓴 필적도 있어 일관성 있는 필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바, 편지속에 있는 술먹은 내용이 도대체 필적감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감정물인 편지가 군입대전의 여자친구에게 쓰여진 것이고, 편지봉투가 정서적인 붓글씨 형태로 쓰여진 것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로 술때는 안정된 상태에서 편지를 쓴 것으로 추측된다. 편지속의 술 먹은 얘기가 바로 술취한 상태에서 쓴 것으로 연결시키는 그의 순진한 사고가 어리둥절하기 만 하다.).

이상에서 감정결론을 바꾼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김형영의 감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감정서 자체의 검토에 의한 감정변경 불가의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는 필적감정의 이론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할 때 이동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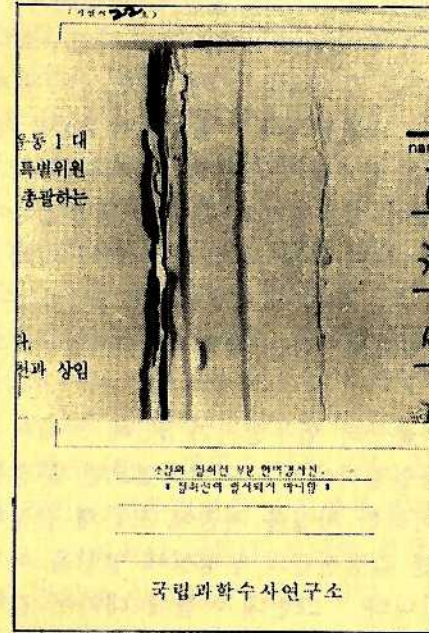
김형영은 한 개인의 글씨체가 연령에 따라 바뀌는 것에 관하여 “어릴적에는 계속 바뀔 수 있으나, 20세를 전후에 필적이 고정되며, 그후의 변화는 개인차가 많습니다.” 라고 증언하면서, 동일인이 쓴글이라 해도 작성시기에 따라 다른 필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만일 필적감정의 대상이 된 각 필적자료의 작성시기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이러한 작성시기를 고려하여 감정소견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형영의 증언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20세 이전에는 필적의 변화가 많으므로 필적감정이 용이하지 않고, 그 이후라도 작성시기가 많이 차이가 나면 역시 동일인의 필적인지 판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유서는 공소사실에 의할 때 1991.4.27.부터 5.8.까지 사이에 쓰여진 것입니다. 한편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는 김기설의 큰누나가 조카 혜정을 출산하자 이를 축하하여 육아법에 관한 책을 선물하면서 책표지 안쪽에 써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수사기록 169면, 장병호 진술 참조).

조카 혜정은 1981. 7.9. 생입니다(수사기록 23면). 따라서 1965년생인 김기설이 위 글을 쓸 때는 중학교 3학년 무렵으로서 유서의 작성시기와는 10년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앞서의 김형영의 증언에 의할 때, 이론적으로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는 과연 동일인이 쓴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김형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자료’가 김기설이 작성한 것으로 검사로부터 들을 정도이므로, 필경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의 작성시기 및 작성경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양심적인 필적감정전문가라면 마땅히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과는 이동여부 논란불능의 소견을 견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감정결과를 바꾼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필적감정에 관한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상과 같이 유서와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및 주민등록분실신고서의 이동여부는 최소한 논리적으로 여전히 이동여부 논란불능으로 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김기설이 여자친구 안혜정에게 보낸 카드나 편지등도 유서와 이동여부 논란불능으로 되어야 합니다.



전민권이 김기설씨 것이라며 제출한 수첩의 필취선용 현미경으로 확대한 모습. 김형은 감정결과 필취선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

전민련이 제출한 업무일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감정회보에서 유서와 동일필적으로 감정했습니다. 유서와 업무일지가 동일필적이란 말은 유서와 업무일지 모두 한 사람이 썼다는 뜻임은 삼척동자에게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형영도 이 법정에서 “유서와 전민련의 업무일지 필적이 동일한 필적으로 사료됨”이란 감정소견은 동일인이 썼다는 뜻이라고 분명히 증언하였습니다. 유서와 업무일지를 동일인이 쓴 것으로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이 감정결과는 아마도 이 사건에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검찰에 있어서 가장 곤혹스러운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일지는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3인의 필적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일지 3장중 맨 앞장은 전민련 실무자인 이동진, 둘째장은 김기설과 임무영, 셋째장은 김기설이 쓴 것입니다. 새삼 반복할 필요 없이 업무일지와 유서와 동일필적이란 뜻은 업무일지가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고 유서 역시 한 사람에 의해 쓰여졌으며, 양자가 동일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업무일지가 3인이 쓴 것이 명백한 이상 업무일지와 유서가 동일필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 명백합니다.

만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처음부터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해서 쓰여졌음을 알고도 업무일지가 유서와 동일필적이라고 감정하였으면 분명한 허위감정일 터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실을 처음에 모른채 감정하여 양자가 동일 필적이라고 감정하였다면 감정전반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감정착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하여 김형영은 처음부터 업무일지가 3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알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감정의뢰 받는 당시 검사로부터 “맨 앞장 글씨(이동진이 쓴 부분)와 둘째장 다섯째칸 파란글씨로 기재된 부분(임무영 글씨)”이 각각 다른 글씨로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그는 두 필적이 업무일지내에 유사비율 45%이하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처음부터 3사람의 필적이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감정 대상물의 필적이 누구의 필적이냐를 감정하는 사람이 의뢰자로부터 감정물의 필적이 누구의 것인가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유서와 동일한 필적이 업무일지에 있느냐

에 주안을 두었지, 업무일지에 다른 사람이 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정서에는 이와 같이 3인의 필적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유서와 같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업무일지와 유서가 동일필적이라고 썼다고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평소에 서로 다른 필적이 공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특정 필적을 뽑아서 대상필적과 대비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공존여부를 기재하지 않고 양자 동일필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유서와 업무일지에 관한 필적감정의에 이 사건의 모든 다른 필적감정 자체도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필적이라고 사료됨”이라는 또는 결론에 대하여 과연 대상필적에 서로 다른 여러 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는데 이와 관계 없이 한 사람의 필적인 것처럼 기재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자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하여 정당하게 묻습니다. 도대체 “동일필적”이란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앞서 상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검찰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처음 전민련 업무일지를 압수할 당시부터 감정의뢰할 당시까지 업무일지가 이동진, 임무영, 김기설 3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출두한 이후 1991.7.4.까지 업무일지를 피고인 눈앞에 들이대며 내가 김기설이 쓴 것처럼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자백을 강요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아마 전민련 업무일지가 김기설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후 처음 유심히 보게 되었고, 그리하여 마침내 전민련 업무일지가 이동진, 임무영, 김기설 3인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앞서의 김형영의 증언에서 보다시피 검찰도 시인하고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립무원의 검찰청 조사실에서 자백을 강요당함으로 인하여 돌연 드러난 진실, 이 일은 이 사건에 있어서 국민모두가 객관적인 증거를 목놓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극적으로 피고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번갯불처럼 번쩍 빛나게 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환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감정의 허구가 발가벗겨지고, 논리적으로 피고인이 업무일지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습니다. 증인 김형영은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다고 하면 될 것을, 그가 보기에 다수의 필적이

유서와 비슷하게 보여, 즉 70%이상의 유사비율이 발견되어 동일필적으로 감정하였다고 하면 될 것을 그는 허둥대며 처음부터 3인의 필적이 공존하는 줄 알았다고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움직일 수 없는 감정결과 “유서와 전민련 업무일지는 동일인의 필적”은 업무일지가 3인의 필적이라는 사실과는 영원히 융합될 수 없는 물과 불의 관계인 것을 그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결과 대로라면 유서필적과 업무일지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이므로 그의 감정소견을 다른 감정소견을 적용할 때의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업무일지가 3인이 쓴 것이므로 유서도 3인이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이동진, 임무영을 새로 추가하여 유서대필자로 기소할 것입니다. 아니 임무영은 이미 한번 유서대필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엄청난 강압수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동진 차례입니다.

단언컨대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진 이상 이 비극적이고 잔인한 코메디는 당장 중지되어야 합니다.

(11) 수첩조작문제

앞서 검찰의 수첩조작주장 논리의 기괴함에 대하여 일별 하였습니다만, 검찰의 수첩조작 논리는 밀바탕으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첩절취선 불일치 감정결과와 수첩에 기재된 글씨들의 필기구 색깔등에 관한 홍성은의 진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전민련이 제출한 김기설의 수첩에 관하여 떨어진 전화번호 기재부분 3매는 수첩 본체의 잔류부분과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감정하였습니다. 수첩 절취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 감정결과는 앞서의 전민련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과 함께 이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감정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식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김기설 수첩 본체와 떨어져 있는 전화번호기재 부분 3매의 절취선 일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수첩에서 일부 면수가 떨어져 나가기 전의 완전한 수첩의 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파본과 덧끼워져 있거나 겹쳐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으므로 감정의 대상이 된 수첩이 과연 완전한 형

태로 제본되어 있는 것인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책자 뒤에 보통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로 기재된 것을 상기하면 된다). 그리고 제본의 방법, 사용된 접착제의 종류와 점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떨어져 나가고 남아 있는 잔류부분이 수첩의 맨 아래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다소 바닥선에서 올라와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떨어져 나간 면수는 몇장이고 남아 있는 잔류부분은 몇매인지도 정확하게 측정해야 됩니다. 아울러 떨어져 나간 부분의 상호순서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열거한 감정방법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곧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 뒤에 만일 감정대상이 된 책자가 파본이나 덧끼워져 있는 부분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는 한 감정소견은 “감정물에 파본이나 기타 덧끼워져 지거나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없음을 전제로 할 때, 떨어진 부분 몇매는 남아 있는 책자의 몇면제의 잔류 부분과 절취선이 일치한다 또는 일치하지 아니한다”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 감정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장 김형영은 변호인의 “상식적으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주장되는 부분이 과연 원래의 책자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는, 책자의 총 면수, 책자의 제본에 관하여 낱장으로 하나씩 묶어 만들었는지 또는 여러장으로 묶어 만들었는지 기본적인 책자의 제본방법, 제본에 사용되는 실과 접착제의 종류, 굵기, 전체적인 접착도 및 각면의 접착도, 떨어져 나간부분의 면수 및 남아 있는 흔적의 면수 위치등을 검사해야 하지요”라고 물었더니 뜻밖에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변호인이 “증인은 증인이 감정한 바의 ‘전민련에서 김기설의 것이라 제출한 수첩 1부’의 총 면수가 몇쪽인지 아나요”라고 물었더니 “모릅니다”라고 엉뚱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감정에 앞서 최소한 완전하게 제본된 1991년도 전민련 수첩은 보고 이것과 김기설 수첩을 대조하면서 감정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하여 “증인은 어느 한 면도 떨어져 나가지 않은 완전한 형태의, 증인이 감정한 수첩과 같은 시기에 동일하게 제본된 전민련 수첩을 본 일이 있나요”라고 물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감정이 끝난 후에 한 번 본 일이 있습

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이 알고 있다시피 전민련에서 제출한 김기설 수첩은 최소한 7매가 본체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며 그중 전화번호기계 부분 3매가 떨어진 채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수첩본체의 잔류부분은 7매이며, 만일 김기설의 수첩이 다른 보통의 수첩과 다르게 인쇄소의 재본과정에서 덧끼워져 있는 장수가 혹 더 있다면 그리고 그것도 마져 떨어져 나갔다면 떨어져 나간 매수 및 잔류부분은 7매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우리중 그 누구도 김기설의 수첩이 파본이나 덧끼워진 장수가 없는 보통의 완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어떻든 김기설 수첩본체에 남아 있는 부분은 최소한 7매이상 인데, 변호인이 아무리 대강 했어도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감정했겠지 하고 김형영에게 “증인은 증인이 감정한 수첩의 잔류부분의 면수가 총 면쪽인줄 아나요.” 물었더니 정말 뜻밖에도 “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나간 면수에 대하여는 검사로부터 감정할 무렵에 들었는데 “4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떨어져 나간 면수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최소한 7매 이상임이 분명한데 그는 검사가 4매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한편 남아 있는 매수는 3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첩의 절취선 여부를 감정하도록 의뢰받은 사람이 어찌서 검사로부터 떨어진 매수를 듣게 되었는지 그 경위도 이해하기 어렵거니와 떨어진 매수는 4매인데 남아 있는 잔류부분의 매수는 왜 3매인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동인은 검사의 “4장이 떨어진 것을 완전한 수첩과 대조한 적은 없는가요” 라는 물음에 대하여도 “예” 라고 답변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절취된 석장의 순서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특별히 첨언하지 않더라도 도대체 김기설 수첩의 절취선 일치여부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은 일반 상식인에 의한 관찰 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것이며,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행해진 바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감정은 정말감정이 라고 이름 붙이기조차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는 오직 떨어진 3장의 존재만 알고 있었을 뿐 감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에 관한 지식도 없었고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아무리 정밀한 기계와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이견 수첩의 절취선 일치여부에 관한 완벽한 감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김기설의 수첩이 파본이나 덧끼워져 있는 부분이 없는 완벽하게 재본된 수첩임을 그 누구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수첩의 절취선이 일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감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전민련이 김기설의 수첩을 제출하자 마자 수첩의 절취선이 일치 하지 않으니 조작되었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이제 검찰 스스로도 왜 검찰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그릇된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았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본래적인 감정불능의 논리는 이 부분감정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무능과 무책임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12) 유서와 피고 필적의 異同 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피고인의 진술서, 항소이유서 등이 유서와 동일 필적이라고 감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정의 전문적인 측면이 아니라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예를 제시하여 이 감정결과가 잘못되었음을 보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견 보기에 유서 2매에는 보통사람들이 쓰는 글씨와 달리 ‘ㅎ’의 필법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즉 보통은 ‘ㅎ’을 쓰는데 있어서 대개 윗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서 ‘ㅎ’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되는데, 유서는 이와 달리 매우 특이하게 ‘ㅎ’의 윗부분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서 ‘ㅎ’으로 쓴 것이 많이 눈에 띄며 후자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장 김형영도 이러한 필법상의 특징을 시인하고 있으며, “김기설 명의의 유서를 쓴 바로 그 사람이 유서의 필체와 같은 속 필체로 동일한 분량의 글을 쓰는 경우 자음 ‘ㅎ’의 필법에 있어서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에 보이는 비율로 ‘ㅎ’과 ‘ㅎ’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하였다면 그의 속필체로 쓴 글에 있어서는 그 비율은 어떻든 간에 ‘ㅎ’과 ‘ㅎ’이 혼용되는 필법상의 특징이 당연히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형영도 시인하는 바와 같이 감정의 대상이 된 피고인의 진술서 등에서는 ‘ㅎ’

의 필법에서 오직 'ㅎ'만이 사용되고 'ㅎ'으로 쓰여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 압수된 피고인의 필적 및 교도소의 검열을 거친 옥중편지를 비롯한 모든 피고인의 필적에 예외없이 공통된 'ㅎ'의 필법입니다. 정말이지 단 한 자도 'ㅎ'으로 쓴 것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만일 유서대필자라면 이런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ㅎ'의 필법, 이것은 피고인과 김기설의 글씨를 쓰는 습성에서 가장 눈에 쉽게 띄는 차이입니다.

두번째로 통상인이 곧 알아채는 글씨의 특성은 유서 2매는 글씨의 방향이 대체로 수직방향 또는 왼쪽 아래방향으로 기울여 쓰여져 있으나, 피고인이 쓴 글은 대체로 오른쪽 아래방향으로 기울여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글은 특히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옥중편지에서 그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김형영도 이점에 관하여 "다소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유서나 다른 김기설의 필적과는 달리 피고인의 필적이 특히 오른쪽 아래로 기울여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옥중에서 쓰는 것이므로 특별히 급하거나 쓰는 자세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만일 유서대필자라면 유서 2매도 대체로 옥중편지처럼 오른쪽 아래로 기울여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서 2매는 오히려 수직방향 이거나 왼쪽 아래로 기울여져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글씨의 방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서 2매와 피고인의 진술서등을 비교할 때, 유서 2매의 글씨는 전체적으로 글자가 가로로 넓게 퍼지고 글자가 비교적 큰편인데 반하여, 피고인의 글씨는 피고인의 각종 필적자료를 두루살펴 볼 때 가로보다는 세로로 길게 쓰여진 편이며 글자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입니다.

따라서 필적감정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필적과 유서필적이 동일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견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양자의 필법상의 특징으로 보이는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일본인 증인 오니시 요시오가 증언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언급하여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13) 한겨레신문사가 의뢰한 사실감정결과

한겨레신문사는 2회에 걸쳐 중앙인영감정원을 운영하는 이인환에게 필적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1회는 유서필적 사본 1매, 김기설 수첩사본 1매, 피고인의 옥중편지 사본 1매를 감정 의뢰하였고, 2회는 유서사본 2매, 전교조 원주지회 사무실 개소식 방명록 원본 1매, 피고인의 보고서 원본 1매, 성남 터사랑 창립대회 방명록 사본 1매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감정사항은 1, 2회 모두 유서필적과 나머지 필적과의 이동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바, 1, 2회 모두 유서필적과 이동여부 논란불능의 회보되었습니다(검찰이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유서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적이 김기설 필적과 피고인 필적이 섞여 있으므로 모두 유서와의 이동여부 논란불능으로 나온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당시 언론은 피고인의 필적이 유서필적과 같다고 감정되지 않았음에 주목하여 위 감정결과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인환 본인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시사저널 1991.6.27.자 참고자료 참조). 특히 동인은 2회 감정에서 유서필적과 제일 가까운 필적은 전교조 원주지회사무실 개소식때 쓴 김기설의 방명록의 필적이고, 가장 다른 필적은 피고인이 1988.3.16. 작성한 보고서의 필적이라고 개인소견을 밝혔습니다(1991.5.25.자 한겨레신문기사 참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인환은 1977년 정식 공채시험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들어가 1981년까지 필적감정업무에 종사한 사람입니다. 이인환의 감정결과는 피고인의 무고함을 보이는 중요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나. 홍성은의 진술

홍성은의 진술중 공소사실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홍성은이 검찰에 제출한 때모, 홍성은의 수첩에 기재된 김기설 전화번호, 대책회의 문제, 5.7.밤의 피고인 집전화 등에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상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김기설의 수첩에 관한 기억인데 이 부